第218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1年2月27日(火)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계속)
2.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계속)
3. 戶籍法中改正法律案(계속)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계속)
5. 사법시험법안(계속)
6.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7. 국가인권위원회법안
8. 국가인권위원회법안
9. 국가인권위원회법안
10. 商法中改正法律案
11. 섭외사법개정법률안
12. 가압류제도개선에관한청원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14.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5.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
16.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17.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대안)
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19. 相互信用金庫法中改正法律案
20.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1.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22.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23.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
24.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25.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6.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27.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8.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29.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30.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3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32.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33. 船員法中改正法律案
34.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대안)

35.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36.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대안)
3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38. 水道法中改正法律案
39. 근로자복지기본법안
40.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
41. 技能奬勵法中改正法律案
42. 社內勤勞福祉基金法中改正法律案
4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이강두·주진우·윤영탁·유홍수·서정화·박시균·이해봉·임인배·김동욱·김종하·김일윤·박재욱·박승국·권오을·강재섭·박희태·백승홍·안택수·박주천·박헌기·최선영·현경대·김성조·이인기·이재창·신영국·김기춘·정창화·강신성일 의원 발의)(계속) ····· 6
2.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안영근·임종석·송영길·김호일·김성호·이종걸·이호웅·이창복·이부영·오세훈·정의화·김근태·김부겸·송석찬·서상섭·문석호·남경필·정범구·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6
3. 戶籍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김영춘·안영근·오세훈·정의화·김근태·김호일·송영길·문석호·이부영·김성호·이종걸·조웅규·이호웅·이창복·임종석·김부겸·송석찬·서상섭·남경필·정범구·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6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계속) ····· 7
5. 사법시험법안(정부제출)(계속) ····· 7
10. 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9
11. 섭외사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 9
6.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대표발의)(목요상·김기배·정창화·김용균·박헌기·윤경식·이주영·정인봉·최병국·최연희 의원 외 123인 발의) ····· 19
7.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창복·김원웅·김영춘·강성구·김경천·김민석·김방림·김성순·김성호·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충조·김원기·김원길·김윤식·김태홍·김택기·김화중·김효석·김희선·문석호·박병석·박병윤·박상규·박인상·배기운·설송웅·설 훈·신계륜·신기남·심재권·송석찬·송영길·안동선·원유철·유재규·유재건·윤철상·이강래·이근진·이낙연·이윤수·이재정·이종걸·이호웅·이희규·임종석·장성민·장성원·장영달·장정언·전용학·정범구·정장선·조성준·조한천·천정배·최영희·최용규·한명숙·허운나·김덕룡·김락기·김문수·김부겸·김성조·김정숙·김홍신·남경필·맹형규·박원홍·박종희·박혁규·심재철·서상섭·손학규·신현태·안영근·원희룡·유성근·윤여준·이성헌·이부영·이원형·이재오·임인배·임태희·정병국·정의화·조정무·안대륜·정진석·조희욱 의원 발의) ····· 19
8. 국가인권위원회법안(정대철 의원 대표발의)(정대철·이상수·남궁석·이낙연·천정배·이종걸·이미경·이해찬·함승희·송영길·조순형 의원 외 104인 발의) ····· 20
9.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안상수·김용균·김용학·박종희·엄호성·오세훈·윤경식·이주영·정인봉 의원 외 123인 발의) ····· 20
6.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대표발의)(목요상·김기배·정창화·김용균·박헌기·윤경식·이주영·정인봉·최병국·최연희 의원 외 123인 발의)(계속) ····· 28

14.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임태희·안대륜·김영춘·박주천·
엄호성·김원웅·홍재형·이연숙·정병국·이상득·오세훈·김부겸·강재섭·박근혜·남경필·장태완·
이성헌·김원길·박종근·임진출·원희룡·이강두·김성조 의원 발의) ····· 31
15.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32
28.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권오을·원철희·김문수·김용학·
김원웅·김택기·박승국·박시균·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영국·심규섭·오장섭·원유철·
윤철상·이강두·이방호·이상배·장성원·장정언·정동영·정의화·정진석·정철기·최선영·함석재·
문석호 의원 발의) ····· 32
29.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2
32.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 외
22인 발의) ····· 32
16.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 35
17.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37
15.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39
16.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계속) ····· 39
28.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권오을·원철희·김문수·김용학·
김원웅·김택기·박승국·박시균·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영국·심규섭·오장섭·원유철·
윤철상·이강두·이방호·이상배·장성원·장정언·정동영·정의화·정진석·정철기·최선영·함석재·
문석호 의원 발의)(계속) ····· 39
29.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9
32.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 외
22인 발의) ····· 39
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 40
19. 相互信用金庫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0.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제출) ····· 40
21.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2.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3.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4.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5.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6.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27.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0
30.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 53
3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 53
33.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54
34.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35.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36.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3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60
38.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60
39. 근로자복지기본법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정균환·이해찬·유용태·신계륜·박인상·
이상수·이호웅·한명숙 의원 외 109인 발의) ····· 65
40.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이양희·남궁석·이재선·
김성순·조희욱·유용태·신계륜·박양수·박인상·이호웅·정균환·정우택 의원 외 120인 발의) ····· 65
41. 機能奬勵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72

42. 社內勤勞福祉基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72
4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72

(10시19분 개의)

○**委員長 朴憲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委員長 朴憲基** 산자부장관의 일정상 부득이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유전자 조작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수출입,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결과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인체 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사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고 취급관리자는 취급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정서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통보" 절차는 수입국의 절차가 아니고 수출국의 절차이고, 수입국의 절차는 앞서 보고드린 의정서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이 통보접수의 확인, 결정절차 등이므로 이를 "의정서 제8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로 그 표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나 그 내용이 제8조제5항 내지 제7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하되 안 제12조제3항에 그 준용조항(③제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을 두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제38조에서는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조항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해성평가기관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제4항을 보시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해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기관에 상당하는 정보보호의무와 그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를 각각 부과하기 위해서는 동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조항과 동 기관의 임원 및 지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36조제1항에서는 출입·보고·검사뿐만 아니라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벌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누락된 내용을 처벌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이 모두 43건입니다. 가능하시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법안에 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寅鳳委員** 우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자가 산업자원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최소한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산업자원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라든가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수산물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위원회와의 협조나 협의를 거치고 이것이 제안된 것인지 아니면 산업자원부의 제안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의약부분은 제외하고 농수산물과 기타 여러 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이 법을 종합·조정해서 일단은 수출입 절차와 유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출입을 주관하고 또 유통을 관장하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간사를 하고 실제로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농산물은 농림부장관, 기타 부분은 소관부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절차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鄭寅鳳委員** 정부 내에서 어떻게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문제는 농림부가 관장하고 또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委員長 朴憲基** 문제는 사전에 정부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 법이 성안되었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동안 긴밀한 협조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咸承熙委員** 지금 처벌규정이 아주 많이 있는데 단속의 주체는 일반검찰입니까, 아니면 산자부 산하에 특수한 무엇이 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이것은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법무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咸承熙委員** 법무부뿐만 아니라 세관의 주 업무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관세포탈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단속의 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쪽에 대한……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검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법무부 또는 관세청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 법안이 원래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수정안이 산업자원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鍾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鍾杰委員** 민주당의 李鍾杰 위원입니다.

벌칙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벌칙이 참 많고 벌금하고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업체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수익이 수반되는 내용도 있고 그에 대한 위반사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으로 해서 경제적 수익의 취득에 대한 일부를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취지의 제재로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여하튼 유전자변형물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유통함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무부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다른 법과 균형을 맞추어서 양형을 정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李鍾杰委員**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다른 제재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李鍾杰委員** 반부패기본법이 앞으로 입법이 되어서 실시되면 그와 관련된 내부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부자로서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리펀드해 주는 제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수출입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은폐했을 때 얻는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그런 행위에 관해서는 과태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이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유효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일단 저희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주 실형으로 가서 위해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관계부처에서 종합된 결론이었습니다.

○**李鍾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李柱榮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柱榮委員**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언제가 됩니까? 이 법 시행일이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50개국이 비준하고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습니다. 이 법이 되고 나중에 국회비준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李柱榮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이강두·주진우·윤영탁·유홍수·서정화·박시균·이해봉·임인배·김동욱·김종하·김일윤·박재욱·박승국·권오을·강재섭·박희태·백승홍·안택수·박주천·박헌기·최선영·현경대·김성조·이인기·이재창·신영국·김기춘·정창화·강신성일 의원 발의)(계속)
2.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안영근·임종석·송영길·김호일·김성호·이종걸·이호웅·이창복·이부영·오세훈·정의화·김근태·김부겸·송석찬·서상섭·문석호·남경필·정범구·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3. **戶籍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김영춘·안영근·오세훈·정의화·김근태·김호일·송영길·문석호·이부영·김성호·이종걸·조웅규·이호웅·이창복·임종석·김부겸·송석찬·서상섭·남경필·정범구·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10시37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호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질의를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호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계속)

5. 사법시험법안(정부제출)(계속)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4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사법시험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정기국회 시 상정하여 대체토론까지 마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법안이므로 오는 3월 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3당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술인 결정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게재된 대로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계획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계획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법시험법안은 지난번 회의 시 대체토론과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거치고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바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지난번 회의 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趙舜衡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舜衡委員** 그 당시도 제가 수정안을 준비했었는데 어떻게 무슨 사정인지 회의가 속개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중단된 채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모처럼 진지하게 논의를 하시고 대체토론에서 내 의견이라든가 주장 이런 것도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법시험법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 또 법학교육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국가시험이고 법조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저는 당분간 정원제를 유지하겠다는 기본방향, 그다음에 사법시험을 관리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대체토론에서 다 했고 위원들께서 전부 다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배포)

제4조의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대법원과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4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14조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1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 사람은 법무부차관, 한 사람은 법학교수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13인 중에서 비법조인과 법조인의 비율을 7 대 6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능 중에 선발방법 등 시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5호 규정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은 4조를 삭제하는 것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검토해 주시면……

○**金容鈞委員** 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우선 이 법안에 관한 토론은 종결되었습니다.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金容鈞委員** 그 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 참여하지 못해서……

○**委員長 朴憲基** 참여 안 하신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容鈞委員** 그러나 기록을 위해서 하나 발언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시 이 수정안 검토하시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재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金容鈞委員** 재수정안이 아니고 그때 제가 발언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발언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것은 토론은 종결된 것 아닙니까?

○**金容鈞委員** 그렇더라도 지금 또다시 본위원회에서……

○**委員長 朴憲基** 그것은 찬반토론은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金容鈞委員** 예.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다음에 하시도록, 우선 방금 趙舜衡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千正培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委員** 사실 제 입장은 사법시험이 현재처럼 선발예정인원을 정해서 선발시험으로 하는 것이 당장에는 여러 준비 정도를 보아서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더 검토해서 단순한 선발시험이 아니라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시험법안을 선발시험이냐 자격시험이냐를 완전히 법문으로 확정해 놓지 말고 안 4조와 15조5호를 삭제해서 완전한 자격시험인가 아니면 선발예정인원을 정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구를 법무부장관께서 재량에 따라서 또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찬성 안 하신다고 하면 趙舜衡 위원께서 수정제안하신 대로 적어도 일단 절대평가 방식을 법문에 쓰고 앞으로 절대평가식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일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마디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변호사 자격과 예컨대 의사자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된다든가 또는 법정변호사 역할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국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보좌진에도 얼마든지 변호사 자격자가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컨대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의 지식과 능력이라는 것은 의술 자체로는 크게 다른 분야에서 유연하게 쓰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얼마만큼 선발하고 자격을 주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여러 수급사정을 고려해서 선발예정자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은 직역이 무궁무진하게 넓고 얼마든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적정하지도 않고 아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위헌의 소지마저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趙舜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金容鈞 위원 말씀하세요.

○**金容鈞委員** 여기에서 趙舜衡 위원님의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선발방법에 있어서 너무 많은 재량을 허용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千正培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또 응시인원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과목이라든지 선발방법은 전국민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물론 공청회도 하고 대체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득이한 일로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안건심의 요건이 되지 못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이것을 남겨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해 두겠습니다.

현재 사법시험 과목에서 2차 7개 과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1차 시험과목을 가지고 법학교육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2차 시험과목만 가지고는 법학교육이 매우 경직되게 됩니다.

이 7개 과목만 공부하면 결국 2차 시험까지 합격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역할을 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특히 현금의 법조계에서 중시되는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세법관계, 회계관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는 전혀 발전이 없게 됩니다. 책이 안 팔리면 연구가 부진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시험과목을 7개로 제한해 놓고 또 거기에서 선발인원까지도 애매하게 정해 놓았을 경우에 여기에서 법학의 발전, 7법 이외의 법학발전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미국, 중국이나 유럽에서 법조인들과 우리가 대결하게 될 때 판판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성 있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를 기를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상실시키게 되는 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꼭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2차 과목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험과목을 한두 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이렇게 경직되게 법률로서 시험과목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7개 이외의 모든 법이 법학교육에서 죽어 버리게 된다,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굳이 이 단계에서 발언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원래의 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趙舜衡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시지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세요.

그러면 출석위원 12인 중 찬성위원 3인, 반대위원 7인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위원이 반대함으로써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출석위원 13인 중 찬성위원 10인, 반대위원 2인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시험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1. 섭외사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10시57분)

○**委員長 朴憲基** 장관님의 일정상 의사일정 제10항 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섭외사법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우리 부 소관 2개 개정법률안 중 상법중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섭외사법개정법률안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과 관련 있는 私法的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明魯昇 법무실장입니다.

金鶴在 검찰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자기가 한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고 편법상속 등의 폐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섭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섭외사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개정함이 없이 시행되어 온 결과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동안 국제사법 분야에 축적된 이론을 반영하여 국제화 시대에 외국과 관련이 있는 사법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 명칭을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常居所 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常居所地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바항, 종전에 아무런 규정이 없던 권리능력, 법인 또는 단체, 임의대리, 운송수단, 이동 중의 물건,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지적재산권, 채무인수,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準正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항, 종전에는 친족 분야에 있어서 남편인 夫 또는 아버지인 父의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부 공통의 본국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각 개정법률안은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듣

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致元** 먼저 정부가 제출한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회사의 설립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88조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의 발기인 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1인에 의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1인의 발기인이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발기인 수를 채우고 출자도 1인이 하는 것이 현재 회사설립의 실정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설립 후에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인 점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인회사를 인정할 경우 회사제도의 남용이 우려되므로 형사적인 책임을 명확히 묻는 등 집행상에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입니다.

안 제434조의2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매수에 의한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의 주식소각 방법으로는 자본감소의 방법, 정관의 정함에 따라서 하는 경우 및 주식상환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한 주식소각은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이 되는 이익소각이라는 점에서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동일하되 임의소각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익소각의 기존제도는 정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먼저 한 다음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변경은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주식소각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점에서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따라 영업연도 중에 적절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소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기총회 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수권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2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정관 수권범위 내에서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을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신설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의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 간에 주식 전부를 받거나 주는 방식으로 완전한 모회사 또는 완전한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은 모두 완전 모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만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임에 비하여 포괄적 주식이전방식은 회사가 별도의 완전 모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주주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완전 자회사가 되는 방식이라는 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1999년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 상법상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제도는 현행 제도들의 절차상·비용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물적조직은 그대로 둔 채 인적조직만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인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상법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주식의 교환·이전에 있어서 교환비율이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비율 등을 정함에 있어서 검사인의 조사나 그에 대신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후적 구제조치로서 무효의 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무효의 소의 특성상 그 절차가 복잡하고 구제수단으로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검사인이나 전문가에 의한 기업평가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주식

배정비율·교환비율의 적정성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사인의 조사 등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특정종류의 주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주식이전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 각각 등기절차를 통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바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이주식교환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간이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절차의 개선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총회를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후 회사와의 매수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가격산정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안은 바로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말씀하신 것은 몇 조에 대한 설명이지요?

○**專門委員 金致元** 개정안 제374조의2제4항입니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고 그 산정된 매수가액에 대하여 매수청구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율적인 매수가액 결정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다른 한편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반대주주에게 재산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행 제374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이 정관에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과정에 회계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송으로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 및 이사회제도의 개선입니다.

1번 이사의 정보접근권 보장입니다.

안 제393조 제3항에서는 이사가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93조 제4항에서는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위원의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제표 상태에 대한 보고요구권과 조사권한이 있는 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들에게도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이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한 것은 이사의 업무영역과 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사외이사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회사기밀 보호의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에서는 384조의4를 신설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접근권의 남용 등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회 결의사항 구체화 부분입니다.

안 제393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정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393조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충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상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외의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의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미 정관에 의하

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현행 제도와 관행을 크게 변형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회사의 자산규모에 맞는 탄력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보장 부분입니다.

안 제418조 제1항에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제418조 제2항 단서를 각각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 신주배정이 주주의 지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대기업의 변칙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존 주주의 인수권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제3자배정의 비율 및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418조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가 제416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주의 권리행사 및 그 내용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의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주의 인수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일부 있는바,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범위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보통 주식의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의 인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宋永吉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중개정법률안 제418조에서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증권의 발행의 경우로 확대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 및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宋永吉 의원 대표발의 상법중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朴憲基 위원장, 崔鉛熙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다음은 섭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 명칭을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사법으로 변경하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마련하며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常居所 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常居所地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종전에는 친족 분야에 있어서 夫 또는 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공통의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명칭의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 명칭을 '섭외사법'에서 '국제사법'으로 수정하고 있는바, 이는 '섭외'라는 용어가 동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국제사법이라는 표현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법 명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이라는 명칭은 섭외사법이 마치 '국제공법'에 대응하는 법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크며 '섭외사법'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에서 섭외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하여야 할 법을 정한다는 뜻을 충분히 표현하므로 동법의 명칭을 종전의 섭외사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으나 현행법의 명칭이 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오인될 수 있다는 점과 각국의 대다수 입법례에서 '국제사법'이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원피고 등 당사자 또는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국제민사사건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는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에 관한 원칙은 주로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국제민사소송이 빈번한 최근의 현실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해 온 입장을 반영하여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경우와 같이 아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적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성문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국제재판관할 기준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는바, 향후에는 개별적인 국제민사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성문규정의 입법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현 단계에서 완결된 내용의 국제재판관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법률 분야별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精緻한 규정을 두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입법조치로서 개정안과 같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常居所地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6장 및 제7장의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常居所를 연결점으로 사용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거소 개념을 주거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상거소지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총칙적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의 개념이 국가마다 달라 조약에서 주소지를 연결점으로 규정하더라도 국제적인 통일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등장한 연결점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상거소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동안 定住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개념인 주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실적인 요소가 강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거소 개념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을 정립하여 가기 위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국제조약과 대다수의 외국 입법례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상거소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하여 '상거소'라는 용어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 외국과 달리 '상거소'는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고, 종래의 주소를 일거에 대체하는 연결점으로서 이것이 종래의 주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명확한 점 등 갑작스런 연결점 교체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거소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향후 동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거소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내용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개정안 제5조에서는 판례와 학설의 입장에 따라 이 경우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확정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다만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 규정은 법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종래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 및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내용을 법에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관계로 이는 학설 및 판례의 몫으로 맡겨지게 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학설이 현재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사소한 법 적용의 오류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등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장 채권 중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수정하였으며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계약에 있어 재판관할규정의 신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보호가 방치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소비자계약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재판관할은 국제적으로 이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친족분야에서의 남녀평등 원칙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친족분야에 있어 夫 또는 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나 개정안 제6장 친족관계 중 혼인관계 및 친자관계에 해당하는 제37조 내지 제40조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부부재산제·이혼·혼인 중의 친자관계 등과 관련하여 부부 공통의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혼인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대부분 夫의 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었는바 개정안 제37조 내지 제39조는 이에 관하여 제1순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제2순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제3순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남녀평등원칙이 구현된 단계적 연결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주로 父의 본국법에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 제40조에서는 혼인 중의 친자관계는 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남녀평등원칙을 구현하고 자의 이익보호에도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법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섭외사건의 준거법으로서 당사자가 국적이 없을 때에는 그의 상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고, "상거소가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상거소가 없는 때에는"이라는 표현은 상거소가 확정적으로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거소가 있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안 제4조의 표현과의 통일성 및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법률행위를 행한 자와 상대방이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동일한 국가 안"에 있다는 표현이 양 당사자의 상거소가 동일한 국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 당시에 동일한 국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이라는 표현이 무엇과의 밀접한 관련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는바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宋永吉 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宋永吉委員** 상법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넘겨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趙舜衡 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지금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경제개

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내지 개혁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항을 개정한다고, 그래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항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97년에 세계은행 IBRD 차관 45만 달러를 제공받아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 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와서 용역계약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기업지배구조 개선 보고서도 제출이 되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도 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대충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3자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을 제한한 조항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집중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반영되었고, 집중투표제라든가 집단소송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점이 잘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이라든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화한다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 이사가 대주주에 의해서 선출되고 대주주의 하수인 역할만 하고 그 이익만 대변하고 소수 주주들의 권익은 무시하고 기업의 공적 책임도 뒷전으로 하고 소위 재벌총수의 이익만 대변한다, 이것이 최근의 대우사태, 그 이전에 현대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강화하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선출되어서 그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쿠더트 브러더스와 세종법무법인에게 자문단이 45만 불씩 주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 용역계약서를 보면 상법개정의 5대 쟁점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개 사항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사, 이사회제도 개선입니다. 정보접근권의 강화도 있는데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사회가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19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하도록 보고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독 등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문단의 보고서 작성과정을 보니까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업계 사회단체 대표와 여러 번 회의도 개최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 공청회도 했는데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한 경제개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도입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상장기업 647 곳을 조사했는데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자문단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것을 실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대사태와 대우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 측근들이 기업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전횡을 하는데 이사나 이사회가 상법상의 권한이 있다고 해도 발본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모처럼 또 한번 상법 개정을 하는 기회에 왜 이렇게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거기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한 이유도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습니다.

첫째로 IBRD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주로 거기의 권고사항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은 증권거래법에서 상당 부분 이것을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에 이것을 했는데 정관에서 이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러시아와 칠레 같은 데

에서 하고 있고 선진국에는 별로 없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법리상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점입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경제상황도 보아야 되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결렬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점 역시 연구하고 있으며 큰 부작용 없이 지배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제도가 강화되었고 감사위원회 제도도 도입했고 이래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개정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작해서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舜衡委員** 지금 상법 개정하는 데 재경부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나 경제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재경부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물론 재경부 의견도 참고하고 저희들도 법리상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단점도 많다는 것, 선진국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업도 잘 되고 소액주주도 보호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입법례를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외국의 입법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재벌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 것이 재벌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형태가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그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면서 소액주주도 보호하면 됩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많고 어차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들도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鍾杰委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올라온 상법중개정법률안이나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모두 소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섭외사법개정법률안도 1962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개정 조항 없이 약 40년간을 그동안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법으로 지적되어 왔고 법무부에서 섭외사법개정연구단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연구·검토한 결과를 안으로 만들어 온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이 개정안이지 이것은 제정입니다.

기존의 섭외사법의 체계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상거소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면밀한 심의·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상법도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라든지, 이사의 정보접근권이라든지, 이사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부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이 법안을 보면 이사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의·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鄭寅鳳 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鄭寅鳳委員** 저는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정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경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식회사의 근간을 뜯어 고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법의 개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잘못된 재벌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뜻도 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열은 이미 판가름이 나 있고 기업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투명한 것이 좋고 올바른 것이 좋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은 골다공증과 비슷한, 돈이 다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듯이 이런 말을 정치인이 하기는 힘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자본가들을 적으로 만들고 모든 기업가들을 의심

할 경우 과연 그것을 믿고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가들이 몇 있으며, 또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투자하지 않는데 외국의 어느 기업가가 투자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따져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폐해 일부를 시정하는 것은 몰라도 기본법의 개정법률안을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나서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鄭寅鳳 위원께서 주문과 질의가 병합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李柱榮 위원 질의하세요.

○**李柱榮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제1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섭외사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섭외사법을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상거소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 우리나라에 없던 법체계이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주소개념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李柱榮委員** 영문으로 보니까 habitual res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법에는 주소, 거소, 가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소가 바로 상거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굳이 과거 민법상의 거소 개념과 달리 일상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상거소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이 규정은 국제사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민법상 과거의 거소 개념과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상거소는 거소보다는 주소적 개념이 더 많았는데 이것을 이 법에 도입하게 된 것은 국제협약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이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런데 그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면 민법부터 고쳐 놓고 도입을 해야 될 텐데……

○**法務部長官 金正吉** 이것은 국제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거래와 국제협약에 발을 맞추어서 62년에 제정됐던 법률을 많은 부분을 다시 현행 국제조약이라든지 국제관계에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과거에 이미 거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에 회부되면 그 점을 집중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보면 추상적인 문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 또는 "준거법이 해당 법률 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등의 '근소한 관련'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라는 막연한 개념들이 등장해 있는데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1소위에서 심의하실 때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咸承熙 위원 말씀하세요.

○**咸承熙委員** 아까 존경하는 趙舜衡 위원님께서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해 가지고 IBRD 보고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용역을 받은 블랙 교수라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성향에 대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지요.

○**咸承熙委員** 이 사람이 그 보고서를 쓰면서 미국 스스로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를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나라에다가 요구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꼭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9개 주밖에 안 합니다.

○**咸承熙委員** 집중투표제 같은 것은 기업이 없는, 예컨대 다코다에서 채택하고 있을 뿐이지 기업이 왕성한 캘리포니아나 델라웨어는 아예 채택도 안 한 제도를 기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에다가 규제적 측면이 강한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소위 때 그 보고서의 전문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千正培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千正培委員**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는 역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동안 재벌을 비롯

한 기업의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또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누가 뭐래도 기업구조조정에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류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기업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튼튼히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계속적으로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연구 중에 계신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렇습니다.

○**千正培委員** 그러면 앞으로 상법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제출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BRD 권고사항은 상장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경부와 협의를 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을 왕성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또 투명성도 제고하면서 기업의 비밀도 보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어려운 점도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점을 검토하고 있고, 이 법안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이 논의도 하고 또 현실과 이상을 생각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千正培委員** 어떻든 기업총수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쪽에 많은 강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섭외사법개정법률안은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일단 소위원회에 넘겨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공청회 여부는 거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섭외사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의하는 중에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정부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宋永吉 의원 등 34인이 제출한 상법중개정법률안과 金民錫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상법개정에관한청원, 金武星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상법개정에관한청원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함께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대표발의)(목요상·김기배·정창화·김용균·박헌기·윤경식·이주영·정인봉·최병국·최연희 의원 외 123인 발의)

(11시54분)

○**委員長代理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이것이 법무부 안건이 되어서 장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잠깐만 더 계시지요.

○**委員長代理 崔鉛熙** 장관께서는 행사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아까 양해를 구하셨고 대신 법무부 실무자들이 남아 계시지요.

○**金容鈞委員** 아니, 그렇더라도……

○**委員長代理 崔鉛熙**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金容鈞委員** 그러면 이것을 좀 일찍 상정하셔야지요.

○**委員長代理 崔鉛熙** 다른 법안이 많아서요.

○**金容鈞委員** 나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鉛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겠습니다.

---

7.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창복·김원웅·김영춘·강성구·김경천·김민석·김방림·김성순·김성호·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충조·김원기·김원길·김윤식·김태홍·김택기·김화중·김효석·김희선·문석호·박병석·박병윤·박상규·박인상·배기운·설송웅·설훈·신계

륜·신기남·심재권·송석찬·송영길·안동선·원유철·유재규·유재건·윤철상·이강래·이근진·이낙연·이윤수·이재정·이종걸·이호웅·이희규·임종석·장성민·장성원·장영달·장정언·전용학·정범구·정장선·조성준·조한천·천정배·최영희·최용규·한명숙·허운나·김덕룡·김락기·김문수·김부겸·김성조·김정숙·김홍신·남경필·맹형규·박원홍·박종희·박혁규·심재철·서상섭·손학규·신현태·안영근·원희룡·유성근·윤여준·이성헌·이부영·이원형·이재오·임인배·임태희·정병국·정의화·조정무·안대륜·정진석·조희욱 의원 발의)

8. **국가인권위원회법안**(정대철 의원 대표발의)(정대철·이상수·남궁석·이낙연·천정배·이종걸·이미경·이해찬·함승희·송영길·조순형 의원 외 104인 발의)

9.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안상수·김용균·김용학·박종희·엄호성·오세훈·윤경식·이주영·정인봉 의원 외 123인 발의)

(11시57분)

○**委員長代理 崔鉛熙**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李仁基 의원 외 132인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지난 2월 23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이미 계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과 같이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미경 의원 등 95인), 의사일정 제8항 국가인권위원회법안(정대철 의원 외 114인), 의사일정 제9항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인기 의원 외 132인), 이상 세 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李美卿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議員** 李美卿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될 역사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인권보장 수준이 눈부시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 일반의 인권의식은 낮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적 법·제도가 온존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사법기구 및 경찰·검찰 등과 더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 40개국이 인권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저를 포함하여 9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외에 각 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관련 2개의 법률이 더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정당의 당론과 관계없이 여야 국회의원 95명이 본 법안을 제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인권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가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위원회를 소속 없는 독립국가기관으로 조직하고 총 11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 상임인권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운영·인사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및 인권위원은 조사결과 및 보고서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둘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법령안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 및 자문·권고,

셋째,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여부 및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넷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공권력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私人 간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여 당사자 사이의 화해 및 조정을 신속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사과정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구제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위증, 허위진술, 증거의 은닉과 조작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고 허위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고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법령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崔鉛熙 간사, 朴憲基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권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오늘 제출된 3개의 법안 모두가 소속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의 당론이 있습니다마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杰議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李鍾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鄭大哲 의원이 본 설명을 하게 되어 있으나 공동발의자로서 발의준비에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로 인해서 인권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즉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비롯해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인권교육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동 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는 첫째 인권에 관한 법령 또

는 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둘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셋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넷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섯째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그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 또는 진정하려고 하는 자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진정서의 열람을 금지하도록 해서 진정인의 진정권을 보장했으며,

여섯 번째로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 진술서 제출요구권,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권,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구제철차와 관련해서는 진정의 각하, 다른 구제철차에의 이송, 수사기관과 위원회와의 협조, 합의의 권고, 조정, 고발 및 징계요구, 법률구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권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방해, 진정서 작성 방해, 자격사칭,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이상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李仁基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基議員** 존경하는 朴憲基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칠곡 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치계와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인권법이 이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또 하나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헌정사 동안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 의해 침해가 되는 예를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특히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인권을 향해 던진 부메랑이 인권법이 되어 되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인권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명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5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각각 3인을 지명하되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재정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인권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개최권,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자료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사실조회와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

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그 원인 되는 사실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인 보복을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이 인권을 구제할 최상의 법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수정과 보완을 거쳐 훌륭한 법률로 거듭 태어나 인권수호의 성전이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致元** 국가인권위원회법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美卿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3개 안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하고 그 소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현행법상 헌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소속이 없는 국가기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 관련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원을 선임하는 입법례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무처의 설치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장의 국회 출석·발언권입니다.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위원장의 국회 출석·발언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국회 출석·발언권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더라도 국회법 제120조제2항의 개정과 병행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청문회 조항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인권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 등이 청문회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의 인정 여부가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절차와 방법이 포괄적으로 위원회 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청문회 실시의 공고,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인정입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위원회, 인권위원, 위원회의 직원 등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형사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이유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의견표명의 권한을 가진 인권위원회의 구성원 등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행 법 체계상 헌법 제4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외에 법률에서 새로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책임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로서는 안 제35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 또는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조사범위를 국가기관 등에 의한 정치적 기본권 등을 포함한 헌법상 기본권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 기존의 국가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입법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의 업무에까지 조사를 하게 될 경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안 제31조제2항에서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에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면의 경우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에 그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면제의 효과를 가지는 사면을 받은 경우까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제5호에서는 위원회가 접수한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재판·기타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는 인권위원회의 조사절차가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재심절차가 될 우려가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및 재정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사의 한계로서 자료제출 거부사유입니다.

안 제40조제8항에서는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사법·입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나 그를 보조하는 자의 행위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진정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임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당사자를 위한 소의 제기입니다.

안 제49조제1항에서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법원에 필요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회의 소 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수행의 능력이나 자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가 직접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임의적 제3자 소송담당의 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제소권은 소멸하는 것인지의 여부,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의 계속 중 피해자 본인이 별도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소의 운명, 소송 계속 중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처리문제 등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행 국가 소송체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출석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입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출석 불응자에 대하여 동행명령 및 형사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으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경우에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은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인권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국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석강제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당

사자 또는 관계인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먼저 구금·보호시설의 정의부분은 3개항이 동일하고, 시효계산의 특례에도 鄭大哲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허위진정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조 제4항에서는 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진정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허위진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인권위원회가 아닌 피진정인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아닌 인권위원회의 고발을 그 처벌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李美卿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鄭大哲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李美卿 의원 안과 서로 다른 부분만 설명하도록 해요.

○**專門委員 金致元** 알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李美卿 의원의 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합니다마는 鄭大哲 의원 안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의 설치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 안에서는 다른 안과 동일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출석발언 및 의안제출권을 인정하되 대통령안의 제출에 있어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법무부의 관여를 인정한 것으로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대통령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반론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권위원회의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李美卿 의원 안과 동일합니다마는 여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행위금지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의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관계도 다른 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직권남용, 불법체포 등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사의 한계, 자료제출 거부사유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사자를 위한 소의 제기, 이 부분은 李美卿 의원의 안과 동일합니다.

이하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鄭大哲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仁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두 안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른 안과 다른 점은 인권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제46조의3에 의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되는 직위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로 한정하고 있는바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의 권한 부분도 李美卿 의원의 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청문회는 李美卿 의원 안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는 鄭大哲 의원의 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 부칙 제2조에서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李美卿 의원 안은 수사 중인 것은 모두 각하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의 한계, 자료제출 거부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안과 다른 점은 안 제35조제7항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사항인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게 하되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은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기밀사항 외에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무총리로 하여금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대상이 반드시 행정부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부에 한하여 자료제출 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출석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은 李美卿 의원 안과 유사합니다마는 단지 그 형량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검사의 임명요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게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행 법체계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소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는 소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안에 관해서 국민이나 각 정당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양해하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趙舜衡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舜衡委員** 제가 세 분 제안자 의원께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李美卿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95인이 했고 鄭大哲 의원이 한 것은 114인이 했고 李仁基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132인이 했습니다. 합계를 하니까 341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은 273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341명이 되는지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李美卿議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95인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鄭大哲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고 李仁基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61인, 한나라당 31인, 자민련 3인, 이렇게 해서 95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31인, 민주당 61인이 여기에 겹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법안을 3년 이상 끌다 보니까 조속히 제정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먼저 당론이 정해지기 이전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촉발제 역할을 해서 그 이후에 각 당에서 당론이 정해져서 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인 의원 중에서

겹쳐지는 의원들께서는 일단 당론에 전체적으로는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몇 가지 점을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좀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니까 李仁基 의원께서 하신 법안의 의원들은 중복되지 않고 李美卿 의원하고 鄭大哲 의원이 한 두 법안에서 의원들이 중복……

○**李美卿議員** 아닙니다. 李仁基 의원님 쪽에서도 31인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저간의 사정은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이신 李美卿 의원께서는 鄭大哲 의원 법안의 발의자로 되어 있으세요. 찬성자도 아니고 발의자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저간의 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발의자께서는 한쪽은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지금 발의하신 법안의 핵심적인 사안이 채택이 안 되면 당론에 따르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투표하실 것입니까? 만약 자유투표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발의에 대해서, 의원들이 서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지나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세 가지 법안이 나란히 있는데, 물론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문은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르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치관의 차이까지 있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崔炳國委員** 저는 법안보다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법안을 보면 대단히 난삽합니다. 위원회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체계가 대단히 난삽하고 또 전문위원도 3개 법안을 각각 검토보고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대비표도 개개의 문제점 같은 것은 즉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해서 3개 검토의견서를 종합해서 그 하나하나 중에서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고 3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다 그렇게 한쪽으로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특히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柱榮 위원님!

○**李柱榮委員** 李美卿 의원님께 잠깐 이 법안 제안경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소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그동안 활동해 왔고 거기서도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李美卿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 내용은 그 시민단체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앞으로 공청회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李美卿議員** 많은 부분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李柱榮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寅鳳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지요.

어차피 대체토론은 다음에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鄭寅鳳委員** 소위원회할 때 더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李美卿 의원께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막연하게 이미 세계 40개국이 인권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개국이 어떠어떠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李美卿議員**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상 3건의 법안들은 제정법이므로 법안심의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는 3월 5일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술인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게재된 대로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계획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

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憲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대표발의) (목요상·김기배·정창화·김용균·박헌기·윤경식·이주영·정인봉·최병국·최연희 의원 외 123인 발의)(계속)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6항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議員**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는 법무부장관께서 참여하셔서 밀도 있게 심의되고 국가 장래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장관이 마침 바쁘시고 해서 이 제안설명을 오후 회의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金容鈞 의원입니다.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기부 비자금의혹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기된 정치비자금들에 대한 논란이 국정혼란의 요인이 되고 있고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종래 정치비자금 사건이 국민의 불신을 높여 가고 민주헌정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1992년 金大中 민주당 총재의 20억＋α 수수사건,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제기되었으나 민란이 우려된다 하여 중단한 金大中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의 670억＋α 수수사건, 千容宅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으로 밝혀진 金大中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재벌제공 대선자금 수수사건, 4·13총선 이후 제기된 총선자금 의혹사건, 2001년 1월에 제기된 안기부 예산 의혹사건과 그 수사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치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특별검사에 의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국민이 공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의혹이 짙은 5대 정치비자금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상기 설명한 사건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국민의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별검사가 여야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정치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정치풍토를 이룩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會瑄**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제기되면서 일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는바, 차제에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제기되어 왔던 다른 정치비자금 의혹사건들도 함께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특별검사제도는 그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별지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현실 및 법제와의 부합 여부,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 기존 검찰수사권과의 중복문제, 실질적 효용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왔고, 이 법안 제2조에 규정된 5대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도 별지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찬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소위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일부 체계 및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은 첨부된 자료 별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柱榮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柱榮委員** 이 법안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세칭 金大中 총재의 20억+α 사건하고 670억+α 사건은 현 金大中 대통령이 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월 초에 법무부에 당시의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서를 보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침해와 명예보호를 위해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보내지 않고 또 본 위원이 법무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자, 이번에는 "불기소결정서를 보낸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의 당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을 벌어야 되겠지만 아직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 본 위원이 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그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 결정이 있었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 이 사건 처리를 어떤 경과를 밟아서 했는지 보고를 받거나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없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실무자 중 잘 아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경과를 밝혀 주십시오.

○**法務部檢察局長 金鶴在**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柱榮委員** 오늘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法務部檢察局長 金鶴在** 알고 나왔습니다.

○**李柱榮委員** 알고 나오셨으면 여기에 관계된 기초자료는 공부하고 나오셔야지 대체토론 때 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데 그것도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데 법무부에서 그런 입장 준비도 없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李柱榮委員** 원래 불기소 결정이 되었어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재개 결정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개할 수 없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경과를 거쳐서 조사가 종결되었는지 그 경과를 묻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종결된 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李柱榮委員**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지, 수사도 안 하고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사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검찰이 수사를 해서 종결한

사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조사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하지요. 그리고 범죄혐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지 오래된 사안인데 그 경위를 말씀하시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李柱榮委員** 이 정도의 사안일 것 같으면 장관께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제안되었는데……

○**法務部長官 金正吉**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2월에 종결된 사안이고 절차가 특별히 진행되어서 항고했다든가, 재항고를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결과가 나와야……

○**李柱榮委員** 그 당시 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법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종결했는데……

○**李柱榮委員** 그 당시에 피의자 소환조사도 안 했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누구를 수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한 것을 전체로 보아 가지고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결할 때 '혐의없음'을 결정했으면 충분히 조사를 해서……

○**李柱榮委員** 충분히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만약 고발·고소가 있었으면, 거기에 승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면 아마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李柱榮委員** 이번에 야당 의원이 기소된 소위 안기부 자금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이 잡듯이 계좌추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샅샅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기에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참고인 자격에 불과한 사람까지도 피의자로 해 가지고 긴급체포 형식으로 불러 가서 과잉조사를 한 데에 비해서 이 사건들은 피의자 소환조차도, 기본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 당시에 고발해 온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은 분명히 이의가 있었으면 그때 아마 이의를 제기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항고나 재항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李柱榮委員** 그런데 불기소 이유는 왜 안 보내주는 것입니까?

이 사건 결정 이유를 영원히 은폐하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기소가 되면 재판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밝혀지지만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들에게 명예나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다른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서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우려라든지,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를 달고 계십니까?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다 보내왔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또는 진정인들이 불기소이유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이유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고지를 요구하면 그것은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의 사생활침해라든지,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李柱榮委員** 위원장님, 지금 법무부에서 당시 이 사건의 조사경과에 대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한다고 하니까 곧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 사건은 어차피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에 법무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관해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임태희·안대륜·김영춘·박주천·엄호성·김원웅·홍재형·이연숙·정병국·이상득·오세훈·김부겸·강재섭·박근혜·남경필·장태완·이성헌·김원길·박종근·임진출·원희룡·이강두·김성조 의원 발의)

(14시41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4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太熙議員** 정무위원회 任太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과 여러 법제사법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를 포함한 23명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약관법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관에 대한 거래는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게는 불리하게 작성되기 쉽고 일단 통용된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부당성을 항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992년 법 개정 시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거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한 사업자 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처리실적을 보면 시정명령보다 시정권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99년 말 현재 시정명령이 246건인데 비해서 시정권고 조치를 한 경우가 48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의 법으로써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관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권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약관의 기본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 고객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다수 고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제한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법제원칙상 경과조치 사항이 아니라 적용례 조항인 것으로 보이므로 "②(적용례) 제17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4시47분)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반영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상근감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임원인 감사의 비상근으로의 개정과 관련해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가 임원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조 제1항 중 "안전기술원에"를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검토하신 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柱榮委員** 종전에 상근감사였던 것을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법취지가 무엇입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이번에 정부 경영혁신……

○**李柱榮委員** 구조개혁 때문에요?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3년 예산규모가 1000억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李柱榮委員** 상근일 경우에는 봉급을 공무원에 준해서 주어야 하는데 비상근으로 할 때에는 출장비 정도만 주면 되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래도 원자력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없습니다.

○**李柱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8.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권오을·원철희·김문수·김용학·김원웅·김택기·박승국·박시균·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영국·심규섭·오장섭·원유철·윤철상·이강두·이방호·이상배·장성원·장정언·정동영·정의화·정진석·정철기·최선영·함석재·문석호 의원 발의)

29.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 외 22인 발의)

(14시53분)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3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그리고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議員**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長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 2월 20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218회 임시회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동법의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식량의 적정자급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식량의 적정자급목표를 포함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국민적 관심을 모아 나가도록 하며, 소비자에게도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은 李相培 의원, 宋錫贊 의원, 金泳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 2월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고, 제218회 임시회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재해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의 범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단위를 추가 규정하였고, 어가의 범위에는 수산업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임업분야의 재해지원을 농어업 분야와 같이 이 법에 의한 체계적인 재해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 정의규정에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개념을 신설하고 개별 지원규정에 동 개념을 포함시켜, 묘포장 등 "임업용 시설"의 복구비와 유실수 등 "산림작물"의 비료대 종묘대 및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한 철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피해복구 지원항목 "시설비" 이외에 "철거비" 항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소요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급금 지원에 따른 복구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농어가로 하여금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복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농가는 당해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급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굴은 매년 1억 1000만 불 이상을 수출하는 중요 수산물입니다마는 최근 주요 수입국들은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제품의 보존·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위생규정을 강화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어촌 실정을 보면 굴 패각 야적장 등 간이작업장에서 굴을 생산·가공하고 있어 그 위생수준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굴을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함으로써 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굴 수출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굴 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에 굴 껍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당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굴 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가 국유지이므로 공유지는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그에 따른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고, 이를 당 위원회의 제4차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후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법안의 취지와 심의경과를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안 제42조제1항에서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만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각각 약칭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의 안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산림작물"이라 함은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상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의 경우에도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법조문을 앞으로 당겨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구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서는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포괄위임의 원리상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일기불순 등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예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복구 이전에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 제4조제4항을 보시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에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의 취지와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4항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굴양식어업인의 경우 국유지를 대부하여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 중 대부 대상은 잡종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의 인용조항인 이 법안 제24조제3항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조항이고,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조항은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보시면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법문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과 제38조제1항은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기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舜衡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舜衡委員** 질의보다도, 장관들은 왜 안 나오셨지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지금 현재 예결위 답변 중에 있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趙舜衡委員** 해양수산부 법률도 있잖아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 나왔습니다.

○**趙舜衡委員** 거기도 오늘 예결위예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趙舜衡委員** 지금도 예결위 진행되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시간이 아마 조금 늦으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趙舜衡委員** 그래요? 그러면 차관님 왜 오셨어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일정이 워낙 오후 늦게 되는 줄 알고……

○**趙舜衡委員** 아니, 두 분이 다 오면 안 되지요. 장관이 여기 오시면 차관은 거기서 일 보셔야지, 조금 늦게 오는데 왜 오세요? 처음부터 안 오시기로 한 것 아니에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저도 지금 예결위에 나와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면 장관은 예결위도 안 나오셨어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오늘 서면답변하는 부서의 경우는 차관이 대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왔어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지금 저는 급하게 안건 다루기 때문에 예결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趙舜衡委員** 아니, 장관이 왜 출석 안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장관님께서 연락받으시고 지금 현재 나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안건을 급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올라왔습니다.

○**趙舜衡委員** 장관님 오시기로 했는데 시간을 못 대니까 차관이 급히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鄭長善議員**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것이 뒤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3시 반에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관이 시간을 못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들 가셔도 좋습니다.

---

16.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15시07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6항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건교부도 오늘 장관이 못 나오신다고 미리 양해를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건교부장관께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에 따른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대신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에서 제출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형사처벌대상으로 되어 있는 무등록 자동차정비행위 중에서 등록한 작업범위를 위반한 정비행위와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한 통고처분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간결하게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을 보시면 안 제85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난자동차를 "변조"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하여는 범칙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변조"라는 표현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고 제34조에서는 자동차의 구조변경뿐만 아니라 장치의 변경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 행한 자동차정비업자"로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柱榮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柱榮委員**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중에서 등록한 작업범위를 위반한 정비행위하고 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를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이 개정안 주요골자인데 과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까? 그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작업범위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79조에 보면 무등록정비업자, 그러니까 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李柱榮委員**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었겠습니다마는 형벌체계라는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가벌성들을 고려해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을 처벌할 가치가 높다라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종전의 규정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고처분으로 해서 얼마까지 범칙금을 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1000만 원 이하이고 최저 50만 원……

○**李柱榮委員**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가벌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라고 할까 국민적인 필요성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아닙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이용자들의 아주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시간상 문제도 있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李柱榮委員**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결코 경미한 사안들이 아닌 것 같은데,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는 무거운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아닙니까? 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도 결코 가벼운 행위들이 아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통고처분으로까지 낮추는 이유를 제가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육상교통국장 金鍾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정비했을 때에는 현재와 같이 형사처벌합니다. 그런데 등록업종에 종합정비가 있고 소형정비, 경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정비면 소형정비로서의 작업범위가 정해져 있고 부분정비업이면 부분정비업대로 작업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했을 때 그 경우에만 통고처분제를 도입하고 현재 무등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제안설명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인가요?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그렇습니다. 정부 당초 안에는 무등록정비를 했을 경우에도 통고처분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교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李柱榮委員** 이 법안은 형벌체계상 경중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혹시 이 개정안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입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예, 그 의미도 있고요.

○**趙舜衡委員** 그 의미도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규제개혁 입법추진의 일부로서 한 것이지요?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그렇습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위원님, 그런 취지도 있고요……

○**趙舜衡委員** 그것이면 돼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법안이 수십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을 무등록으로 한 사람들을 이제까지는 형사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정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지금 모든 업종을 자유롭게 진입벽도 허물고 누구든지 하게 하지만 인명에 관한, 자동차 정비업에 관한 것은 등록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등록 자체를 안한 무등록은 형사처벌되고 또 작업범위를 위반한 것은 범칙행위로 했지요?

작업범위를 위반한 것도 자동차 안전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하면 큰일나는 것인데 이것을 형사처벌하던 것을 범칙금으로 낮춥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버리는 행위를 이제까지 형사처벌하다 범칙금으로 바꾸는데 자동차 버리는 것이 요새 길가에 갖다 버리는 그것이지요?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예.

○**趙舜衡委員** 건교부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사람들이 왜 갖다 버립니까?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세금 같은 것을 못 내 가지고 갖다……

○**趙舜衡委員** 첫째는 세금 안 내려고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금 안 내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법을 어기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갖다 버리면 환경에 얼마나 큰 유해가 됩니까? 그것 그냥 부식되고 몇 년씩…… 어제 TV 뉴스를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섬에까지 갖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에 버려 놨으니까 섬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무단히 갖다 버리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행위예요.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자동차 버리는 행위를 형사처벌을 안 하고 그냥 가벼운 것이니까 범칙행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 도대체 어느 발상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위원님, 저희들이 전부 다 범칙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안만 범칙금으로……

○**趙舜衡委員** 아니, 지금 갖다 버리는 행위 아니에요? 갖다 버리는 것도 중한 것 있고 경한 것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갖다 버리면 똑같지.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어떤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는데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하고요.

○**趙舜衡委員** 그냥 갖다 버리는 행위는 범칙금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구별이 있어요? 넘버를 있게 하고 갖다 버리면 괜찮고 넘버 없이 갖다 버리면……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넘버를 떼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趙舜衡委員** 넘버를 붙이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버릴 때는 추적할까 봐 자동차 아무리 뒤져도 소유주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버리는 행위가 우선은 세금도 안 낸 행위가 되고, 두 번째는 심각하게 환경에 위해를 주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갖다 버리는 행위가 대단치 않고 경미하니까 형사처벌하는 것을 이제는 범칙금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자동차 버리는 행위로 우리 사회가 입는 위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법을 만듭니까? 이러고도 규제개혁입니까?

○**建設交通部陸上交通局長 金鍾熙** 저희들이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朴憲基** 趙 위원님, 이것은 소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들어가세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자동차 갖다 버리는 것 지금 환경위해가 심각합니다. 건교부에서는 어쩌자고 형사처벌하던 것을 범칙금으로 하자고 합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는 형사처벌을 그대로 하고 다음에 작업범위를 위반한 것 중에는 경미한 사항만 통고처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趙舜衡委員** 제안설명에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委員長 朴憲基** 이 법안은 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시도록 하세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건교부차관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17.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5시24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7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이 법안 관계로 오전에 나오셨다가 오후에는 푸틴 대통령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미

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安澤秀** 재정경제위원회의 安澤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 선임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공개매수절차의 개선, 협회 등록시장의 독립적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 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 종료 이후에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당일 최종거래가격 등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장외 대체거래시장을 허용하고,

둘째,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주식 등을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셋째, 대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넷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사외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들에게 제공하여 주주들의 사외이사 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일곱째,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부실·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으로써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1쪽 안 제78조제4항에서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공익대표인 이사 2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에서 공익대표를 3인 이내로 규정하여 그 숫자가 반드시 2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규정과 모순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71쪽 안 제189조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대신에 주식소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나 이 경우 소각대상 주식은 신규로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신규취득 주식만 해당하도록 보완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본 조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련이사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당해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4쪽 안 부칙 제10조에서는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절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제21조의2의 매수절차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개매수절차 변경과 관련하여 제21조의 매수업무 대리인지정 의무 규정, 제21조의3의 매수절차위반 취득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하였고, 유인물 34쪽 안 부칙 제11조에서는 임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종전에 회사 아닌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만 하고 있으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당해 임원은 기한 없이 계속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당해 임기만료 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咸承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咸承熙委員** 제안이유 중에 장외 대체거래시장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ATS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거래소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거래를 중개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래시간 종료 후에 기업의 상황과 외국증시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주식거래 수요를 중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추가적인 거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현재는 거래시장이 3시에 마감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외국증시가 저희하고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필요한 경우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咸承熙委員** 한정된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 간의 시세조정이나 주가조작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그래서 저희가 종가를 기준해서 그 가격으로 거래하게끔 했습니다.

○**咸承熙委員** 그래도 사고자 팔고자 하는 것 간에 형평성이 주어진다고 봅니까? 그것은 한정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모든 거래자들한테 같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咸承熙委員** 제가 과거 88년도에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주가조작이라는 게 대부분 마감시간 종료 후 취소된 거래라든가 무효처리된 거래라든가 잘못 체결된 거래라든가, 증권회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별도로 구좌를 관리하면서 많이 해먹더라고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해 놓으면 더 많이 해먹을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가격은 정해진 가격 하나로 일단 거래토록 했고 시세조정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咸承熙委員**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이번에 개정안 마련하는 것 보니까 5건의 개정안이 재경위에 제출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발의가 4건이고 정부발의가 있는데 5개 법률안 중에 집단소송제 조항이 들어 있는 게 있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제가 알기로는 재경위에서 다룬 법안 중에서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趙舜衡委員** 정부 원안에는 없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없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것은 소송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趙舜衡委員** 의원발의한 중에도 집단소송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없었습니다. 아마 법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16.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계속)

28.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권오을·원철희·김문수·김용학·김원웅·김택기·박승국·박시균·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영국·심규섭·오장섭·원유철·윤철상·이강두·이방호·이상배·장성원·장정언·정동영·정의화·정진석·정철기·최선영·함석재·문석호 의원 발의)(계속)

29.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

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 외 22인 발의)

○**委員長 朴憲基** 의결하지 않았던 몇 개의 의안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19. 相互信用金庫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0.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제출)

21.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2.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3.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4.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5.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6.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7.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5시40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8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경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재정경제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지금 한·러시아정상회담에 참석하고 계셔서 차관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97년에도 도입하려 했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번에 다시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건전한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과 국내 현실여건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특정범죄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하고,

둘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분석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셋째,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금융비밀보장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등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명칭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

였으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요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자본금을 현행 자본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되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를 충족하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금액을 정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위에 상응한 변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한 경우 상급자가 단독으로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행 상급자의 연대책임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와 리콜 권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수를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의 요건이 되는 결함의 범위를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개정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朴憲基 위원장, 咸承熙 간사와 사회교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투신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보고제로 전환하여 상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둘째, 투신사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증권투자회사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M&A 전용펀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기업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소수주주의 권한행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개정은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나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임한 후 주주총회에 사후보고토록 하고,

둘째, 감사인을 새로이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존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며,

셋째,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부실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 그 명단과 위반사실을 함께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은 규제완화 추세에 맞추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회계법인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설립최저자본금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하며,

둘째,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셋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결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용평가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져 오던 신용평가업을 신용정보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영위토록 하였고,

둘째,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등 의사일정 18항부터 27항까지 10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35쪽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각 호의 기록들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각호에서는 '기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록을 자료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취지로 같은 조 제5항의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관련기록'을 '관련자료'로 수정하였고, 유인물 36쪽 안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 시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각호의 정보'로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9쪽 안 제9조제3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금융기관 종사자 증언거부권을 규정하였는바, 법안 문구는 마치 증언을 하는 당해 금융기관 종사자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입법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유인물 42쪽 안 제17조제1항 제1호에서는 금융기관등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불과한 과태료에 있어서는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서 이 법에서만 특별히 이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고의로'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유인물 43쪽 안 제18조는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현행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과 관련 법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47쪽 안 제10조의2제3항에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취득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할 경우 이 법의 시행

일 직전에 종전 법에 의하여 취득준비를 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16쪽 안 제8조2항에서는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한 이러한 거부표시는 동조 제3항에서 당해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면제하는 중요한 사유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3항에서 상급자에게 거부표시를 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은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 복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시에 따른 자에 대해서 비록 민사 및 형사책임이 아닌 변상책임에 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인물 17쪽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감면에 관한 규정과 타인을 대신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한 회계관계직원의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면규정 및 대위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부터인지 불명확하므로 부칙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22쪽,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이하에서 소비자단체로 약칭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렇게 할 경우 제10조 이하의 모든 조문이 등록된 단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소비자단체는 자율적으로 설립,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업무를 할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31쪽, 안 제53조의2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하면서 관련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만 그 대상으로 하고 서류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65쪽, 안 제58조제6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과징금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은 과징금 징수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것만 따로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유인물 66쪽, 안 제70조제4항에서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대규모기업의 계열회사인 여신금융회사의 자금지원관련금지행위를 시설대여업의 대상인 물건에 부착된 표지를 손괴하는 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위법행위는 그 법익침해의 정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47쪽, 안 제16조의2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2년 동안 그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을 전후하여 발생되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47쪽, 안 제52조의3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부과처분 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이익처분 시의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33쪽,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형의 선고나 징계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법적효과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그 행위 시 즉, 결격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33쪽, 안 제4조제3항제3호에서는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 규정

의 취지는 대기업계열사 또는 출자금융기관이 각각 1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가 최다출자자인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 볼 때 대기업계열사와 출자금융기관의 지분 합계액이 1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37쪽, 안 제9조의2제5항에서는 신용평가업자로 하여금 신용평가실적서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비치,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용평가실적서는 상장기업과 협회등록법인 모두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모두에 비치, 공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유인물 30쪽, 안 부칙 제3항에서는 종전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들이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 이 법의 각종 의무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돈세탁방지법입니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정부원안에서는 4조 금융기관 등의 보고사항을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趙舜衡委員**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수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상당한 이유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자체로 판단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보고하는 것인데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근거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돈세탁방지법이 당초 취지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을 보니까 정부원안은 검찰청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검찰지청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가지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원안의 당초 취지와 수정안이 된 이유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먼저 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로 수정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의심된다는 확실한 것을 명확하게,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너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라든가, 숫자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고해야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무분별한 보고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거래자들의 비밀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서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청의 장이나 지방경찰청 등의 정보제공요건을 삭제한 이유는 이것은 금융정보기구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형사사건 등을 수사하는 도중에 각 검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등에서 FIU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양하고 많은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 개인의 금융비밀 보호라든가,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기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요구해서 그 최고책임자를 경유해서 요구하도록, 아마 저희가 당초에 만든 것은 수사상 필요할 때는 시간적으로 빨리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단위 기관장에게도 요구권을 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비밀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당해 최고 기관장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세탁방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취합하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 수사라는 것이 검찰청이나 일선 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일이 금융정보분석원까지 경유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이나 대검이라는 것이 수사 지도를 하고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도해 나가는 기관이지 금융정보를 일일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분석·검토해서 일선 검찰에 이것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경찰청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그런 막연한 금융거래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서 실효성은……

정부에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 설득도 하시고 강력히 못 하십니까? 다른 경우를 보니까 정부부처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경우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로비해 가지고 다 관철시키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하는 대로 슬그머니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의 하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으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야단체 등에서는 가능한 한 금액을 낮추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선량한 예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높여야 된다는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시민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입법하라고 해 가지고 등 떠밀려 가지고 재경부도 몇 년 동안 손놓고 있다가 급해 가지고 정부도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액수 관계없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각 나라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趙舜衡委員** 그 권고안에 금액 제한 없이 하라고 되어 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정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의심이 된다는 상황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대통령령 정하는 데에도 양 측면, 선량한 금융거래자를 보호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실효를 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금액이 5000만 원, 1억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그래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하는 것도 그렇고 참고하실 것이 95년에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실적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한 건이라도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는 그런 보고의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마약류거래 의심 있는 것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법 내용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5년 동안 없으니까 없는지 몰라도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런 흐리멍텅한 식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해 놓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도저히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고하는 것이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2월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도 없는 법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선량한 금융거래하는 사람이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법 강력하게 시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사회를 지향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현금거래를 억제해야 됩니다. 정치개혁도 그렇고 부정부패도 그렇고 조직범죄도 그렇고 현금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선진사회가 그렇게 저런 것 할 수 있는 것이 현금거래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만 불 이상 예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인권을 경시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盧泰愚 전 대통령 딸이 몇만 불 쪼개 가지고 예금했다가 적발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2000만 원 이상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됩니다. 현금거래를 억제해야 부정부패도 방지하고 선거 때 돈 많이 쓰는 것도 억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부원안이 그런대로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

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아마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趙舜衡委員** 누가 악용을 합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趙舜衡委員** 어떻든 여기에 탈세도 빠지고 정치자금도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崔鉛熙 위원 질의하세요.

○**崔鉛熙委員**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관리하면서 검찰청장이 요청할 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 특정금융거래정보 중에 항목도 다양하고 요구하는 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요구할 때만 줍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줍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료 중에서 검찰총장에게 가야 할 부분은 검찰총장에게 바로 줍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분석기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이것이 부정·불법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崔鉛熙委員** 그러면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것 필요합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崔鉛熙委員** 특정금융거래정보원이라는 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거의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그것은 조금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崔鉛熙委員** 어떻게 다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고 건전성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등 거래자들이 그런 불법행위의 가능성이나 차명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 등에 금융기관의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서 이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 아까 얘기하신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분석기구에다가 통보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하도록 각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동일한 금융거래정보를 하나의 기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형사사건에 관련되는 의심이 가는 자료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도 주고 경찰도 줄 수 있는지, 또 이것이 관세 포탈이라든가 밀수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관세청에도 주고 검찰에도 주고 이러느냐 이 말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법률에는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우리가 정부안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검찰 쪽만 주기로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분석기구에서는 형사사건이 검찰에 가야 될 것인지, 경찰에 가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일괄 봐서 이것은 경찰로 내려보내든가 검찰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경찰도 여러 가지 일반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그 정보의 내용은 경찰청장한테 바로 줄 수 있도록 구분해 가지고 금융분석기구에서 나누어 가지고……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나누어 주는데 우려되는 바가 이렇습니다. 불법자금이나 불법거래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개인의 금융정보가 흘러 나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다룰 법안에 나타난 35개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량한 사람들의 금융거래가 통보될 가능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금융기관에서 분석기구에 통보하는 자료도 상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崔鉛熙委員** 그것만 갖고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IU 관련해 가지고 소위 시민단체에서 정치자금을 왜 포함 안 시키느냐 하고 세금 포탈한 경우, 외국의 입법례에 이 두 가지를 넣은 경우가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없는 것 같고요, 탈세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과 호주의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선정한 결과 탈세가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마지막으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은 수긍이 가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중앙단위 기관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방에 있는 기관들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 회계관계를 잘 모르고 또 이런 변상책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급자가 내용을 잘 모르는 기관장의 무지를 악용하려는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해 놓았지만 하급자 즉 회계관계 직원이 상급자의 무지를 교묘히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이 법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監査院法務審査官 林炳俊** 감사원 법무심사관 林炳俊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관장의 무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崔鉛熙委員** 지방에 가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監査院法務審査官 林炳俊**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행정관행상으로 볼 때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하급자가 책임을 지는 문제와 또 상급자의 무지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 논리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단순히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책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으로 한 것이 상급자에게뿐만 아니라 기관장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명백히 되었는데도 다시 위법한 지시를 해서 부득이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면책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상급자들도 '아, 이런 조문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오히려 회계관계 질서를 밝힐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나쁜 기관장, 개인적인 영리라든가 개인적인 잇속을 위해서 하는 나쁜 기관장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서면으로 2회 이상 한다거나 해서 물증을 받아 두는 것이지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회계책임자가 기관장의 무지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 상급자가 모르는 사이에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책임자는 기관장의 무지를 범죄의 도구로 소위 말하는 악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관장이 나쁜 짓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못된 하급자의 그런 것도 미리 예방해서 양쪽 다 꼼짝 못하게 해 놓아야지 '기관장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급자는 책임 없고 너 혼자 책임진다.' 그러면 하급자가 유도해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비책도 강구해서 양쪽 다 꼼짝 못하게 해 놓아야 부정이 안 일어나지요. 만일 회계관계에 엄청난 펑크가 난 다음에는 변상도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상한들 예방효과만큼 못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겠느냐? 이 법의 대비책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監査院法務審査官 林炳俊** 문제는 이런 회계관계 책임문제가 귀속이 될 경우에는 누가 얼마만큼 변상할 것이냐 이런 것이 오히려 중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급자가 윗사람에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유를 명시했을 경우에 그랬으면 그것은……

○**崔鉛熙委員** 그 답변은 알아듣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법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 정도 예방책이면 되겠는데 회계관계 직원인 하급자가 기관장의 무지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경우 예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완전무결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상급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만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지방에 가면 단체장들이 회계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왕

법안을 개정하려면 완벽하게 개정해서 양쪽의 구멍을 막아 두어야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방책이 이 법안에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별다른 것은 없고 회계관계 직원들에게는 일반직원에게 없는 변상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상책임에 한정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지 일반 징계책임이나 민형사책임 같은 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崔鉛熙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고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財政經濟部國庫局長 陳炳化** ……

○**委員長代理 咸承熙** 두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회계집행행위를 거부한 부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崔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거꾸로 교활한 부하가 상급자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이 법안의 1항이 연대책임입니다.

○**崔鉛熙委員** 나는 사후 변상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방책을 묻는 거예요. 기관장이 불법한 지시를 할 경우에는 회계관계 직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근거가 남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崔鉛熙委員** 그와 같이 회계관계 직원이 형법상 악의의 도구로 이용할 경우의 예방책도 강구해 놓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 이 개정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財政經濟部國庫局長 陳炳化** 이 법의 명칭이 회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에 관련된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崔鉛熙委員** 그러면 회계관계 직원이 책임을 지는데 이렇게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가중된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양쪽의 예방책이 다 강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財政經濟部國庫局長 陳炳化**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변상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아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에서 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사기관 등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1호, 2호, 3호 해서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안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수정안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李柱榮委員** 그런데 사용목적은 그럴듯하게 뇌물사건 수사라든지 대상범죄가 되는 것을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용목적에 악용할 소지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을 낸 사람을 조사하려면 본래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목적을 은폐하고 사용목적에는 그럴듯하게 다른 것을 기재하면 진짜 목적을 은비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보장책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지금 두 가지 우려하시는 것이 일반인으로 보면 비밀보호의 측면이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목적 외 사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李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이 안 드러날 때가 문제이지요. 나중에 범법행위를 밝혀서 기소를 할 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혐의가 없다고 덮어 버리면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그 단계에서 은비된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보장책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하나 제시해 볼게요. 거기에다가 사용목적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사용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라고 하면 어때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기록보관을 5년간 해야 되고 그것을 취급한 사람이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보완대책이 아니겠나……

○**李柱榮委員** 보완대책은 되겠지요. 그다음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또 사후의 문제이고, 정보를 제공할 때 과연 이것을 제공해야 될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소명서를 받으면 더 확실하게 오남용이 예방되지 않을까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가장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오남용 부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3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외국 입법례나 이런 것을 다 찾아봐도 이런 것까지 정한 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咸承熙 간사, 朴憲基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 각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소되지 않거나 범죄행위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서는 되었지만 사실상 35개 범죄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기구 자체에서 이것이 목적 외냐 아니냐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 추후에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李柱榮委員** 소위에 넘겨지면 이 부분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과 운영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석원의 인원구성을 어떤 식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막연해서 혹시 백지위임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부의 조직과 기구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각 부서의 직제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명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명칭은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문제는 최근에 발족한 외국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우선 작은 규모로 출발해서 통보자료의 양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정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 기구에는 정부의 각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李柱榮委員** 주로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공무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이것도 수정안에 의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3조2항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좀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조직에 있어서의 참작사항이라고 그럴까, 어떤 식으로 반영할 예정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그것을 위원님들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부조직 자체에서도 예컨대 분석기구의 장이 자기가 분석해 가지고 자기 힘으로 내 보는 자료를, 재경부장관 산하에 있겠습니다마는, 장관한테 결재받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위임전결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柱榮委員** 그렇게 하려면 이 조직을 구성하는 자체에 있어서 좀 독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내의 공무원들로만 구성해 가지고는 그런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면 어느 특정 정당이라든지 어느 정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 조직에의 참여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이것이 결국은 소속된 공무원들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런 오남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기구로서 국세심판원이 있습

니다. 재경부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준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휘·감독을 전연 받지 않고 있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李柱榮委員** 이 조직이 위원회식으로 회의체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위원회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비밀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비밀보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보 자체, 예컨대 의심할 만한 정보가 대외적으로 미리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기관의 인사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李柱榮委員** 앞으로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尹景湜 위원 질의하시지요.

○**尹景湜委員** 尹景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 체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과 수정안을 준비하시면서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를 이 법안에 규정하고 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尹景湜委員**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들을 파악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에는 고발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제가 생각나는 게 실명거래법도 비슷한 게 있고 그다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중에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景湜委員** 본 위원은 부정수표단속법과 관련해서 체계상 서로 모순이 없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법조항을 보면 4조1항에 그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는데 이 '지체없이'라는 시한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부정수표단속법 같은 경우는 수표가 부도났을 때 48시간 이내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지금 '지체없이'라는 용어들이 우리나라 다른 법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을 보면 영어로 promptly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체없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그것을 원용해서 했는데 다른 법에서도 보면 '지체없이' 하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일단 이것이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본부에 있는 준법감시인이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서 종합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런 정도의 시간은 용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尹景湜委員**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단서를 잡는 단계라고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수사로 하면 초동수사 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령 '지체없이' 안 했으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보고 자체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는데 늦게 보고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요. 이것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니까 차라리 명확히 시한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를 할 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합당한 근거를 명시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명시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까? 이것이 결국 '범죄혐의가 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렇게 형식화되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저희가 앞으로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거래의 유형을 지침으로 내려 줄 겁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경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경우에 예컨대 한 사람이 어떤 구좌를 개설해 놓고 여러 번 돈을 빼내온 후에 그 구좌를 크로스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이런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 그것이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尹景湜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조 과태료 부분을 보면 4조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없이 하지

않고 늦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정수표단속법에는 48시간 이내에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표 부도난 사실을 고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는 것이나 여기 보고하는 것이나 결국 수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고발 의무하고 이 수정안의 보고 의무 중에 그 의무의 경중을 놓고 본다면 지금 심의하고 있는 법의 보고 의무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범죄는 민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표 부도사실을 즉시 알려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가 있는 반면에 이 법안은 마약범죄라든가 그야말로 반사회적인 범죄로 인해서 얻는 돈을 세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큰 범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 의무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발 의무보다 훨씬 더 중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더 중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에 처하고 그보다 더 가벼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중한 형사상 벌금에 처하는 것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 법안에 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있고 또 공청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崔炳國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崔炳國委員** 타 위원회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 모르는 것 묻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간적인 구애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타 위원회 법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한두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서 정책질의가 다 되어서 온 것을 체계·자구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낭비고 비능률적입니다.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제가 오늘 회의 벽두에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심의해야 될 법안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체계와 자구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崔炳國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일정 제18항에 관한 부분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한 법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때에 토론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咸承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咸承熙委員** 어차피 저희들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인데 이 법과 어떻게 보면 보완관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을 공청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처분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고 또 하나는 금융실명법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보면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일정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영장주의로써 남의 구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이것이 우리 전체 금융에 관한 하나의 법체계인데 지금 이 2개 법을 보면 결국은 일정한 범죄 유형을 했는데 이 법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나중에 공청회 할 때 보십시오마는, 여기에는 마약범죄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표에 관한법률에서부터 단순폭력행위…… 폭력행위 2조2항, 3조2항도 다 들어 있어요. 굉장히 법이 방만하게, 모든 법정형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37개 법은 법이 37개이고 위반조항으로 따지면 200여 개가 넘어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재산권 등에 대한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실명법에 있어서의 금융거래 예외, 엄격한 실명보장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입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러그러한 범죄혐의에서 얻어진 수익, 그 수익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를 FIU라는 국가기관에 보고하고 국가기관은 그 거래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수사기관이나 세무기관에 넘기자, 결국 범죄혐의만 가지고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서 남의 구좌를 뒤져

보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전제된 범죄를 어떤 범죄까지 우리가 그런 예외조항을 두면서 국가 사회의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더 우월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추구해야 될 헌법상 가치를 더 우월에 두어야 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청회 때 미리 공부 좀 하시고 오셨으면 하고 제가 주제넘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극히 지엽적인 한두 조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셔서 공청회 때는 제대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寅鳳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鄭寅鳳委員**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피폐해져 있는데 결국 그저 막연하게 어떤 가진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지고 고통받고 이러는 것들을 고소해하고 즐기는 좀 불편한 사고방식들이 이런 법까지 오게 되었지, 실제로 지금 존경하는 咸承熙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상당한 의심이 든다거나 혐의가 있는 듯하다거나 이것이 옛날로 따지면 무슨 이상하면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식의 발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소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이 전부 빠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로서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재경부에서 진짜 명운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관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지금 나라 돈이 한푼이라도 모여들어서, 외국 돈이 모여들어도 경제발전이 될지 말지 시원찮은 처지에 나라 돈이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면 돈 많이 가지고 누가 우리나라에 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불편을 끼친다, 이것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은 다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저 다른 외국에서 구색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도 구색을 갖추고 FIU인가 이것 있으면 된다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둡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이것은 또 무슨 법을 만든 것인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상사의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슨 보고를 하고…… 서면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런 거의 시행되지 않을 법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큰 공인 듯이, 실제로 부하직원이 웬만해서 다 잘려 나가는 마당에 모가지 붙어 있기도 어려운데 무슨 서면으로 '당신의 지시가 부당하므로 나는 거부합니다.' 해 놓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법을 만들고 무슨 큰 공을 세운 듯이 하는 게 바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법 8조제3항에서 이렇게 하면 책임을 면하는 듯이 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8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안의 공청회를 하고 다시 대체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8항은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신전문금융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감사합니다.

---

30.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3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16시53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0항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림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축산물 생산의 원자재인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사료안전관리인을 의무 배치토록 하고 사료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또는 성분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혼합할 수 없도록 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사료제조업체에서도 우수제조관리 및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부산물 등을 반추가축의 사료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를 금지토록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법안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수목원 간의 상호교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목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아까 4건의 농림부 소관 법률안 중 유인물의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사료관련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관련 단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로 그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유인물 17쪽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보조사료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단체"라는 표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지 법문의 표현상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단체" 아까 약칭했던 용어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8쪽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료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위임법률상 적절히 아니하므로 이를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로 예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8쪽 안 제28조는 이 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조업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보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총칙인 앞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제1장 총칙의 제4조로 조문을 이동하고 이에 따라 다른 조문의 순서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9쪽 안 제32조제4호에서는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13조제1항을 살펴보면 농림부장관이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3조제2항을 살펴보면 농림부장관이 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그 입법취지상 농림부장관이 정한 특정성분의 함량의 제한과 혼합의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제4호에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유인물 30쪽에 있는 부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성분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제원칙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므로 이에 따라 경과조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과 9쪽에 있는 안 제4조를 살펴보면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수목원을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문에서 공립수목원의 운영과 사립수목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안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목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공립수목원 및 사립수목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원칙상 조문사용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따로 조를 신설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부칙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된 수목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된 수목원"이라는 법문의 표현이 법률상 어느 단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조성계획"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안은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3.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7시03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3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부 소관법률 중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여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선원의 복지향상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업무를 전담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 교대 시마다 승무원명부와 선원수첩을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공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해구역이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일부 선원의 승·하선 교대 시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계속 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는 달리 복지·고용 전담기구가 없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므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동 센터의 사업내용·기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선원의 구인·구직등록업무를 선원 교육훈련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원의 복지향상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 소관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아까 보고드렸던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같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의 검토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쪽과 17쪽에 걸쳐 있는 안 제85조제2항에서는 선원의 요양보상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는 "동법상 선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동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맞춰 안 제85조제3항의 법문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 안 제138조제9호는 벌칙조항으로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85조제2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5조제1항의 위반죄와 동조 제2항의 위반죄를 각각 분리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감사합니다.

---

34.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6.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09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제34항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하여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朴洋洙**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요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배위원님들께서 견문을 넓혀라 그래서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도 해 봤습니다. 법사위원회 선배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하수도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0㎥ 이상 500㎥ 미만으로 정하고 동 시설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계획 및 하수처리오니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물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하수도에 사용되는 자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시설 설치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을 억제하는 등 하수도 정책을 더욱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시설 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공원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해서 자원공원의 용도지구 중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서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공원 중 가장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셋째로 취락지구 및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 조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해서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중 밀집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공원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공원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권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이 입은 재산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케 하고 토지거래 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양보전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에서는 토양측정망을 설치하여서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공장부지, 쓰레기매립지 주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서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둘째로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의 원인자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시·도지사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로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리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과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여섯째, 토양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 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토양환경평가실시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자책임을 강화토록 하며 기존 토양측정망체계를 개선해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요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양오염지역을 효과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3개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안대로 가능하시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6쪽 안 제2조제8호에서 공원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은 공원구역뿐 아니라 공원보호구역에도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 안 제18조제5항에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락지구'라는 용어는 종전규정상의 용어이며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간주되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자연공원'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자연공원이라는 표현은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25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에서는 이를 '공원구역'으로 표현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 유인물 22쪽 안 제26조에서는 천연보호림 등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그 지역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근거법조로서 제23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는 공원보호구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근거법조인 제25조제3항도 함께 언급하도록 수정하고,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 습니다.

유인물 40쪽 안 제82조제2호에서 허가대상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위반행위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22쪽,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에 의한 토양오염조사제도를 종전의 상시측정망 조사에서 일반적인 실태조사 방법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 경우 종전의 상시측정망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에 대한 법적효과가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그 법적효과가 개정법률에 의한 실태조사 효과와 동일하게 되도록 보완하였고, 유인물 18쪽,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설치신고 외에 동 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정처분 등의 효력도 개정법률에까지 연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를 보완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부칙 5조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 제정 방식이 아닙니다. 변칙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수질환경보전법이 하수도법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委員長 朴憲基**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趙舜衡委員** 하수도법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주무국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趙舜衡委員** 그러시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郭決鎬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기본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趙舜衡委員** 말하자면 수질환경 보전하는 법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같은 법률이지만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두 법의 상관성은 있지만 수질환경보전법이 상위개념에 있다고……

○**趙舜衡委員** 상관이 없으면 하수도법을 개정했는데 왜 그 법을 또 개정합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두 법 간의 상관성이 있는 조문은 많은데……

○**趙舜衡委員** 그러니까 그 관계로 봐서 수질환경보전하는 총괄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 보전법이고 그보다 하위개념인 것이 하수도법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수질환경보전법이 다루는 영역이 더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趙舜衡委員**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변칙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번거롭더라도 다른 법률의 개정은 그 법률에서 개정해야 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소관 법률이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다른 부처 소관 법률이라면 번잡하겠지만 같은 부처 소관법이니까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법률이 몇 개나 됩니까? 수백 개 되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30개……

○**趙舜衡委員** 30개밖에 안 돼요? 하여간 상호간에 그렇더라도 한 부처 내에서는 개정할 때는 다 같이 개정해야지 귀찮다고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 안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앞으로는……

○**趙舜衡委員** 법무관 나와 있습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金龍鎭** 예.

○**趙舜衡委員** 이것은 법무관 소관 같은데 평소에 유의하고 있습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金龍鎭** 예, 유의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環境部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金龍鎭** 방류수 기준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趙舜衡委員** 개정하는 것을 내가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부칙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環境部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金龍鎭** 앞으로 유념해서……

○**趙舜衡委員** 유념하세요. 그런데 대체로 부처의 법무관이 법안 기초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지요?

법무관 한 지 얼마나 됩니까?

○**環境部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金龍鎭** 1년 되었습니다.

○**趙舜衡委員** 1년,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이 법무관 소임을 다 못한다고 봅니다. 하세요.

이것은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과 직접 관계 없는 것인데요, 아까 건교부 법안을 심의하다가…… 요즘 자동차를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많이 버리고 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趙舜衡委員** 주거지역에 버리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 오염되는 유해요소 같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섬까지 가지고 가서 버리고 있답니다. 섬에 버려 놓으면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행정기관도 비용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 버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 측면에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법은 환경부에는 아직 없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면 자동차 버리는 것은 쓰레기입니까? 무엇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결국 쓰레기처리는 지자체가……

○**趙舜衡委員** 그것이 환경의 유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지요.

○**趙舜衡委員** 그러면 앞으로 환경 측면에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자동차 관련부처의 관련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용과 폐기까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법령도 있지만 폐기에 대해서는……

○**趙舜衡委員** 상식으로 생각해도 자동차를 버리면 토양오염이 될 텐데 토양 오염되는 것은 환경부 소관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토양오염은 환경부지만 자동차를 쓰고 나서 버리는 것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부처가……

○**趙舜衡委員** 건교부 소관이다? 참고로 들어 두세요. 건교부에서 이제까지는 자동차를 버리는 행위를 형사처벌을 해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경미하고 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범칙금으로 낮춰서 하는 법안을 입법이 돼서 여기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위해 요소도 되는데 어떻게 형사처벌을 그러느냐고 강조했는데, 지금 환경부 소관은 아니고 건교부 소관이라고 그러시는데 건교부 태도는 그렇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현행 법체제상으로 건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저의 소견으로는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舜衡委員** 나중에 부처협의나 국무회의 때 제기하십시오. 건교부에서 자동차 버리는 행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버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委員長 朴憲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舜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칙에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질환경보전법 32조2항 및 4항에서 말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이 법에서의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環境部政策局長 郭決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도시 전체에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시설주체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공장주들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장·군수가 됩니다.

또 운영비 조달에 있어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사용료의 형태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委員長 朴憲基** 알았습니다.

우리 조사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지 용어의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적인 효과를 부가하는 것인데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유

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38.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7시33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7항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과 3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안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 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토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생태계보전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생태계보존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영농손실비 등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의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넷째, 생태계보전에 대한 관심과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를 복원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1997년 8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해서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자 마련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 훼손 정도와 무관하게 부과되고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감면해서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코자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이견을 어렵게 조정해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재원확보는 물론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 법안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댐 건설에 의한 물공급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또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양이 많은 까닭에 물수요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별 물수요 관리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며,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 중수도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물 아껴쓰기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둘째,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넷째,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숙박업·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에 대해서 기존 건물인 경우에도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동안의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서 물수요관리 부문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물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간이상수도 관리 부실 등 그동안 수돗물 공급체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會瑄**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함에 있어서 자연공원구역 및 문화재 관련 구역에 대해서 종전 규정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재 관련 구역에 대해서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의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소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구역이 있으므로 관계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부칙 제4조에서는 권한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제5조제4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대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의 권한이 변경된 조문은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도 이에 포함되므로 이를 보완하였고, 안 부칙 제7조에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으나 그 개정내용이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당해 법률의 개정 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지요.

○**鄭寅鳳委員** 수도법개정법률안이 결국 이제까지 공급을 늘려 보자 이러다가 이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수요를 관리하자는 측면으로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맞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을 제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신규사업에 대한 인허가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컨대 수도사업에 있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량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문제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누수율이 18%로 상당히 높습니다. OECD 국가들은 다 한자리숫자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물수요 관리목표제를 의무화하면서 지금 사실상 운영의 효율화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사업 정책목표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패널티를 도입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행정이나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수요 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러면 이 법안의 전체 골격으로 보면 시·군·구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만을 정하고 시·군·구가 구체적으로 물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관리목표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작년에는 물을 얼마를 썼는데 그 이상의 물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누진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하는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관리목표를 정하는 경우에 결국은 시·군·구는 어떤 목표만 할당받을 뿐이지 할당받은 목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권한이나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각 시·군·구별로 시행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달성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시·군·구의 장들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당목표만 정하는 경우에는 법안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부도 그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물 절약에 나설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도 아울러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누진제가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더 강화하고 계절별로 수도요금을 달리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고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 결정에 대해서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난개발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공급 능력이 없는 난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수도사업에 대한 신규인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다 하는 뜻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鄭寅鳳委員** 구체적으로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수도법이 통과되면 금년에 실시가 됩니다.

○**委員長 朴憲基** 宋永吉 위원 질의하시지요.

○**宋永吉委員** 저도 물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수도법상으로는 절수대책 부분이 실제로 아파트단지에는 규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목욕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금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 무료로 절수기기 설치를 해서 작년까지 전국 18%의 가구에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30%를 상회하는 가구에 절수기기가 설치됩니다.

○**宋永吉委員** 절수기기 설치가 무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대변과 소변을 볼 때 변기의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것하고 수도꼭지에 디스크를 넣어서 30%의 수량을 절약하면서 쓰는 사람은 똑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수압을 높임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다양한 것이 있고 신규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宋永吉委員** 그 의무화되어 있는 법이 무엇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수도법입니다.

○**宋永吉委員** 아까 말씀하신 기존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가는 시·도지사가 알아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공공근로사업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永吉委員**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수도법 자체에는 없고 그냥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수도법에도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宋永吉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炳國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에 보면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崔炳國委員** 그런데 그 협력금하고 가산금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지역 내 시·도지사에게 교부해 가지고 그 돈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비에 쓰도록 되어 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崔炳國委員** 특정지역에서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받은 보전금이라든가 협력금 같은 것은 100% 다 그쪽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왜 100분의 50만 거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뭐합니까?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100이라고 하는 어떤 협력금을 받았는데 50만 그 지역 시·도지사한테 주고 50은 뭐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자연국장이 답변드리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環境部自然保全局長 金炳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金炳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당해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는 국고로 환특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환특으로 들어오게 한 이유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崔炳國委員**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협력금의 50%를 받아 가서 환경부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든지 다른 어떤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0% 다 그쪽으로 복원을 시켜야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울산지역 같은 데는 공해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해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10%만 그 지역에 주고 90%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 같이 공해 없는 지역도 다 같이 배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100분의 50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가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왜 이 지역을 희생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環境部自然保全局長 金炳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0분의 50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을 해서, 물론 그 지역에 환경훼손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시급히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崔炳國委員** 다른 지역은 생태계 훼손이 안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環境部自然保全局長 金炳成** 다른 사업도 현재는 자치단체에 50%……

○**崔炳國委員** 환경부 소관법률 중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環境部自然保全局長 金炳成** 예.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수도법 개정안 제4조의3제5항에 보면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이것이 통과된 것은 아닌데 적용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삭제했는데 이것이 취지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삭제되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작년 6월 23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 시차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데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아직 환노위에서 심의가 되지 못한 관계로……

○**委員長 朴憲基**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이 규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것이 일반법인데 어떻게 해서 특별법의 이 규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환경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갈수기에는 거의 오폐수만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나라에 4대 강이 있지만 유량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강이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중류 또 하류지역까지 전부 다 물을 아껴 가지고 낙동강 본류의 유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 낙동강수질개선의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계보다도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이 물사용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작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법에 우선적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수도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차는 있지만 4대 강 전역이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일반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4조의3제2항부터 4항까지를 보면 물수요관리목표제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안 해 주고 허가도 안 해 주고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委員長 朴憲基**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영천댐 알지요?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委員長 朴憲基** 영천댐이 영천에 있지만 물은 전부 다 포항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천 사람은 어디 물을 먹습니까? 일부는 청도 물을 갖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천댐 물을 영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댐 물은 포항에 주고 영천 사람은 저 멀리 청도의 비싼 물을 갖다 먹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의 직접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교부로부터 영천댐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용수를 얻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물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취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는 취수시설을 만들 돈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장기저리융자금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지금 영천 실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은 영천에 막아 놓고 물은 포항으로 가져가 버리고 영천시민들은 저 멀리 운문댐 물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70년대 초 영천댐을 막을 때는 영천시가 읍 단위로서 잠자는 동네처럼 조용했기 때문에 물 수요량이 없어서 포항 쪽으로 돌려 버렸는데 이후에 영천시가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委員長 朴憲基** 영천 사람들이 전부 양순해서 그렇지 인구가 그때는 17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어 가지고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천시장한테 들으니까 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영천에서는 이 정도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 수급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하게 되면 영천은 계속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취수장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咸承熙委員** 잘 아시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물이 없어서 네바다에서 사다 쓰지 않습니까? 네바다는 지금 라스베가스 하나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라스베가스 같은 것을 LA 근처에 만들면 그 멀리까지 가지 않고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LA 근처에 하나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 네바다는 물을 못 가져가게 하지요. 물로써 라스베가스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영천 같은 그 척박한 곳에 댐 막았으면 뭔가 보완장치가 있어야지 댐이 있으면 거기에 각종 규제가 생겨서 규제만 당하고 땅값도 안 올라가고 거기 주민은 다른 데서 비싼 물 사다 먹고 오히려 그 댐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물론 넓게 보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겠지만 환경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憲基** 바로 이 낙동강수계관리 문제에 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불이익만 받는데 보호하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댐 문제는 사실상 환경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속하는 것이지만 물의 수급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수급계획을 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수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은 없다." 그러면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융자금을 가지고 영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영천시 당국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環境政策局長 郭決鎬** 예.

○**委員長 朴憲基**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9. 근로자복지기본법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정균환·이해찬·유용태·신계륜·박인상·이상수·이호웅·한명숙 의원 외 109인 발의)

40.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이양희·남궁석·이재선·김성순·조희욱·유용태·신계륜·박양수·박인상·이호웅·정균환·정우택 의원 외 120인 발의)

(18시06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9항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의사일정 제40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의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하여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議員** 존경하는 朴憲基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직군 간 소득분배 구조의 왜곡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세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의 모법이 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재근로자 및 실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그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우리사주제도를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재산형성, 경영참여, 노사협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대한 우선배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사주 취득기회를 다양화하며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과배분 활성화 및 직무발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근로자복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근로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이 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하여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議員**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개정안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추가유예하는 등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토대로 노·사·정 합의사항과 관련된 후속조치 내용 및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허용 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 노력을 하도록 하되 축소된 재원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1998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의 내용을 특정·정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권고취지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규정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 속에 동 법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근로자복지기본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28쪽,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근로자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32쪽, 안 제22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 공단이 금융기관에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 그 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치 주 채무의 성립과 관계없이 보증채무가 성립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단이 융자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보증관계도 성립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유인물 43쪽, 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신용보증사업에 관련되는 자금은 이를 별도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계리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야 하나 수입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지출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제46쪽, 안 제57조제6항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규정하면서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권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있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鉛熙委員**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안 4조를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에는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당해 사업장 근로자

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 4조하고 5조가 어떤 다른 법에 규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노동부 법안이 아니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노동부 법안입니다.

○**崔鉛熙委員** 노동부 소관 법안이지만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은 환노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직접 이 법안을 냈습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아닙니다. 의원입법입니다.

○**崔鉛熙委員**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朴吉祥** 근로기준국장 朴吉祥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5조2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라는 법률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주가 세전 수익의 5%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崔鉛熙委員** 여기로 옮긴 것인데 이 법이 만일 제정된다면 폐지되는 법률도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朴吉祥** 예, 이 법은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하고 근로자의생활향상및고용안정에관한법률의 많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을 폐기하고 기본법으로 제정해서 통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崔鉛熙委員** 그것은 놔두고 우선 첫째, 이것은 환노위 의원입법이니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좋습니다. 다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노동부도 관련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있을 것 같은데 행자부나 기획예산처하고 미리 이 조항에 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까?

사실 이것은 노동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朴吉祥** 부처간 협의도 거쳤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할 때……

○**崔鉛熙委員** 아니,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의원입법이잖아요? 이 법은 노동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의원입법이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노동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환노위에 제출한 법안입니까? 사실상 전달한 법안입니까, 어떻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朴吉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金相男**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근로자의생활향상및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종합적인 복지 기본법안으로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당의 이름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鉛熙委員** 그리고 아까 근로기준국장이 제시한 두 법안의 관련조항들이 이 법에 의해서 폐지되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것은 입법형식에 안 맞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누차 그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아마 노동부도 그런 법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존경하는 趙舜衡 위원께서 그 문제를 틀림없이 또 제기하실 것입니다. 법 형식상 이 법에서 다른 법을 개정하고 폐지할 수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 법 자체에서 개정 내지 폐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 간 협의를 거쳤는지는 우리가 사실상 확인을 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좋은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제정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 없는 법만 만들었다고 자랑만 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전문위원이 검토했어요?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제가 했습니다.

○**崔鉛熙委員** 1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또 1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그런데 국가만 놔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다 지웠어요. 13조 14조 15조 17조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17조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여기에는 또 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만 놔두고, 어떤 데는 지방자치단체만 삭제하고 또 양쪽 다 두고…… 그 이유는 뭡니까?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그 조항 중의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했고, 다음에 임의조항 중에서도 일부 삭제된 조항은 노동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노동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취지에서 삭제하겠다고 미리 우리 측에 얘기한 사항입니다.

○**崔鉛熙委員** 아니, 삭제하겠다고…… 전문위원이 노동부 얘기만 듣고 삭제합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법체계가 잘못되었으면 삭제하는 것이지.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이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저쪽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취소하겠다고……

○**崔鉛熙委員**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온 것 아닙니까? 의결되어 온 것을 요청 있다고 법사위에서 임의로 지운 것입니까? 그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노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을 법사위에서 법적인 검토가 아니고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어때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놔 두고 의무규정일 경우에는 삭제했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炳國委員** 저도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가기관들의 권능 같은 것은 조금 무시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기관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것은 다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소위 국회 입법권도 좀 제한되는 것 같고 또 노동부의 권한 같은 것도 거의 행사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 법에서도 여러 가지 전체를 충분히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8조에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가 생기는데 위원회에서 소위 근로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중요정책의 방향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제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 입법권이라든지 국회의 정책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2항에 보면 근로자 대표, 좋습니다. 노사문제니까 근로자 대표가 있고 사업자 대표가 있습니다마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만약에 노동부장관이 노동부의 무슨 일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 법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문제와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노와 사의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사·공익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崔炳國委員** 그것은 국회 환노위에서 하든지, 노동부에서……

○**勞動部次官 金相男** 위원님, 여기에서 법안까지는…… 법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 이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뜻이지요. 다만 지적하셨다시피 노사정위원회는 이 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법적 기구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崔炳國委員** 그리고 정부조직법상의 체계상 문제, 헌법에서의 권한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노동부차관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이 시행되면 많든 적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상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장려하고 의욕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58조6항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지만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할 때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원입법이지만 차관께서는 심의과정에 참여를 하셨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예, 참여했습니다.

○**趙舜衡委員** 환노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정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정협의도 했고요.

○**趙舜衡委員**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안을 입법하려고 한다, 그런데 얼마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하는가, 정부부처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환노위에서 그것 한 적이 있어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환노위에서 이 기본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의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요.

○**趙舜衡委員** 공식적 견해를 받은 게 있냐고요. 58조6항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취지로 근로복지법을 입법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상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취했습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이 법을 통해서 예산이 바로 수반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복지기본법안에는 가령……

○**趙舜衡委員** 언젠가는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물론 예산하고 관련되지요.

○**趙舜衡委員** 그러니까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회법에 정했는데 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환노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구한 적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세요. 더 이상은 내가 묻지도 않아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저희 환노위에서는 각 사업별로 법에……

○**趙舜衡委員**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지요? 내가 대답을 대신해 드릴게요. 그런 일 없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명시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趙舜衡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입법한다고요. 그것만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이 상정했지요? 이것 역시 다른 법률의 개정을 5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교원노조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도 역시 2001년을 2006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에 따른 절차상 아주 경미한 조문정리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워낙 법도 많고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입법경제상 경미한 내용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원노조를 2001년에서 2006년으로 하는 것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거지요? 그것과 관련되는 거지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해서 5년 유예, 그런 것 아닙니까? 실체적 내용인데 이것은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지 이렇게 부칙에서 하는 것은 변칙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준비를 하면 같이 해야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교원노조에서 금년 말까지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교섭창구방법이 규율되기 때문에 같이 한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항이올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고치면서 연결되어 있는

조항을 바로 고치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趙舜衡委員** 물론 연관이 있으니까 한 거지요. 그쪽 것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간단한 조문 정리라면 몰라도 이것은 실체적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같이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든지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아들으시겠지요? 여기 법무관 나와 있어요?

이 5년을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다 합의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16대 국회가 3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5년 후에는 17대 국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1년 지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5년 후까지 16대 국회가 입법을 한다? 모르겠어요. 노사정이 이 중요한 두 문제를 준비하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해서 5년을 유예했는데 이제까지 입법을 다루어 봤지만 어느 입법을 5년씩 유예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지나면 17대 국회예요. 그것은 17대 국회가 구성되어서 할 일이지 우리가 5년 후까지 유예한다? 그 입법권 행사라는 것이 과연 16대 국회가 온당한 것인가 나는 그런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조항이 발효 안 했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발효도 안 한 조항을 또 개정한다 이래 가지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국가의 법률체계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개정도 너무 자주 하거니와, 개정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나중에는 발효하지도 않은 것을 또 개정합니다. 발효를 한 다음에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효도 안 한 조항을 어떻게 또 개정을 합니까? 물론 현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가……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鄭寅鳳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鄭寅鳳委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안설명에 직무발명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한참 본문을 들여다봤더니 부칙 저쪽에 그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놓고 "19조제1항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데 한참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특허법에 보면 39조에 종업원이 당연히 그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발명에 관한 것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신설한 직무발명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朴吉祥** 근로기준국장 朴吉祥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직무발명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관해서 해당 직무발명을 하는 근로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 기본법에 설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그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노사협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鄭寅鳳委員**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부칙으로 슬쩍 끼워서 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기본법에다가 해 놓아서 제가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직무발명에 관한 게 어디 들어 있나 하고 찾는데 한참 걸려서 보니까 부칙 저 끝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이번에도 아마 위원장께서 쉽게 넘기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법은 공문이 나갈 거니까 각별히 법제담당하는 분한테 주의를 주세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朴吉祥** 직무발명에 관한 근거조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鄭寅鳳委員** 됐어요. 다른 것 물어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趙舜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야당이 경제를 발목잡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측에서 정말 흔쾌하게 통과시켜 주어서, 그 당시에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만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말까지 유예가 됐던 조항, 그 중요한 조항 두 개를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한번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5년씩이나 연장해서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2006년도까지 폐지시키는 안을 내는 게 낫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나라 경제에 있어서 노동계가 한 축인 것은 틀

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사용자 측도 상당히 양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어렵게 타협되었던 그 점을 다시 5년 연기시킴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니라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경제가 자꾸, 결국 공적자금만 집어넣고 공장에는 빈 기계만 돌아가고 월급은 공적자금으로 주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관한 책임을 어떤 정권이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정말 정면으로, 결국 회사가 제대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프지만 근로자가 상당수 해고되어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그다음에 다시 근로자를 불러들이는 이런 정면돌파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조금 있다 또 사회적인 동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노사정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연기를 한 것은 아직 날짜도 닥쳐오지 않았는데 금년 초부터 그냥 5년을 연장시키니 앞으로 또 5년 후에 또 그 양반들이 험상궂은 눈을 하면 2011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결국 17대 국회일지 다음 정권이 될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집단한테 엄청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부채들을 후손들한테 안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목소리 높고 또 사회가 일시적으로 동요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합의만 하면…… 결국 상처를 도려내고 찢어내서 거기다가 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상처를 붕대로 감기만 해서 2006년도까지 가 보자, 이런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까지 연장한다고 할 때에도 상당히 오랜 과정의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합의된 건데 금년 말도 오기 전에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들이 정말 국가의 기강과 깊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타 위원회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걱정입니다.

○**千正培委員** 대체토론을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법사위의 동료위원님들이 대체로 부칙에 의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예로 들어 보면 부칙 6조에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 1항의 고용정책기본법이나 2항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아마 노동부 법안이지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千正培委員** 노동부 법안이니까 사실은 개정하기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요. 그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은 노동부 법안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법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경부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재경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오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 소관법안이니까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아까 입법경제라는 말씀을 존경하는 趙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본다면 이 법안을 정부가 당초 만들었을 때 노동부가 성안했다 하더라도 사실 전체적으로 정부 자체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른 부처의 의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가 이것을 한꺼번에 심사해서 법사위에 보낸 것이 일종의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에 반대한다기보다도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법사위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체토론으로 말씀 올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千 위원님과 같이 입법경제상 부칙에서 다른 법률도 개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에다가 변경해 놓으면 법령집에 그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그 법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변경되었는지 폐지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훤히 접해 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부칙에 의해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우리

법사위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노동부차관은 이것을 당연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생각해 보세요. 법령 찾아 보니까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죽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 아닌 자구의 수정 정도나 형식적인 것을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법의 효력에 관한 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국민에게 혼란이 오니까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아니냐, 위원들이 충고말씀으로 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법사위원들의 취지에 따라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법 제2조1 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에 준하는 수입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봉급받고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농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느냐, 혼례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나, 의료비를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나, 또는 장례비 지원을 받나, 나는 그 사람들이 더욱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장관들이 노력할 수는 없나요? 균등하게 해야지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근로자라는 것은 판사, 검사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급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인데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농민들 아닙니까.

이 법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국무회의에서는 이 점도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농민들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도 논의해서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런 지원제도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崔鉛熙委員** 노동부에서 다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신뢰하기 어렵고, 각 부처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을 텐데……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1. 기능장려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42. 社內勤勞福祉基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4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8시54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41항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사내근로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金相男** 노동부차관 金相男입니다.

장관님께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하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은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능장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능인의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 및 서비스기술 종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인정되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의 전승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는 기능을 전수하는 자에게만 기능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능을 배우는 자에게도 지원금을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현재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경우에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사업의 폐지로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기금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폐지로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교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근로자 직업훈련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때 1회 자질향상교육을 이수케 하는 승급교육제도만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3개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2쪽, 안 제23조의3제3항에서는 기금의 합병 시에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달리 규정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하였고,

유인물 15쪽, 안 제23조의8제2항에서는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이 분할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대상은 분할하는 기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분할되는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 안 제8조1항 및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우수기능인 등을 추가하고 있으나 우수기능인으로 표현할 경우 이미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는 명장 및 우수지도자의 예에 따라 별도의 용어정의를 두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나 우수 기능인의 경우 특별히 용어정의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좀더 풀어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24쪽,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종전에는 이를 모두 훈련 실시자가 받도록 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훈련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가 인정 또는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종전에 이미 위탁하고 있는 훈련과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25쪽, 안 제28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로서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내용 중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동조 동항 제3호에 의하여 처분될 것이고 기타 위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였다고 해서 이를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사유로 함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유인물 16쪽,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으나 그 개정내용이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舜衡 위원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여기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복지기금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앞서 논의되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복지기금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국가가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업주가 이익이 났을 때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출연해 가지고 할 경우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아니지요.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이것은 각 기업마다 기금이 있는 개별회사별로 기금이 구성되는 것이고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가 관리하면서 복지를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趙舜衡委員** 이것은 명칭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까?

○**勞動部次官 金相男** 예.

○**趙舜衡委員**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은?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것은 정부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으로 출연도 하고 복권판매수입 등 각종 수입을 통해 가지고 국가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朴憲基 위원장, 崔鉛熙 간사와 사회교대)

○**趙舜衡委員** 여기 5조에 보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바로 이것 아니에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이름도 똑같은데……

○**勞動部次官 金相男** 예, 같습니다. 복지기본법에서는 국가가 하고 노동조합이 하고 기업이 하는 전반적인 복지를 총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했고 이것은 그 중에서 기업주가 운영하는 사내기금입니다.

○**崔鉛熙委員** 3건 다 정부입법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부차관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出席委員(13人)**

金容鈞	朴憲基	裵基善	宋永吉
尹景湜	李鍾杰	李柱榮	鄭寅鳳
趙舜衡	千正培	崔炳國	崔鉛熙
咸承熙			

○**委員아닌出席議員**(7人)

朴洋洙	辛基南	李美卿	李仁基
李浩雄	任太熙	鄭長善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金會瑄
전문위원	金鍾斗
전문위원	金致元

○**行政府側參席者**

감사원	
법무심사관	林炳俊
재정경제부	
차관	李晶載
기획관리실장	李永檜
국고국장	陳炳化
금융정책국장	李鍾九
FIU구축기획단장	金圭復
국민생활국장	吳甲元

법 무 부

장 관	金 正 吉
법 무 실 장	明 魯 昇
검 찰 국 장	金 鶴 在

과학기술부

장 관	徐 廷 旭
원 자 력 국 장	趙 靑 遠

농 림 부

장 관	韓 甲 洙
차 관	金 東 根
농 업 정 책 국 장	金 周 秀
식 량 정 책 국 장	朴 海 相
축 산 국 장	盧 京 相

산업자원부

장 관	辛 國 煥

환 경 부

장 관	金 明 子
환 경 정 책 국 장	郭 決 鎬
자 연 보 전 국 장	金 炳 成
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	金 龍 鎭

노 동 부

차 관	金 相 男
노 정 국 장	鄭 秉 錫
근 로 기 준 국 장	朴 吉 祥
고 용 총 괄 심 의 관	盧 民 基

건설교통부

차 관	姜 吉 夫
수 송 정 책 실 장	金 世 燦
육 상 교 통 국 장	金 鍾 熙

해양수산부

장 관	盧 武 鉉
차 관	洪 承 湧
해 운 물 류 국 장	徐 廷 晧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李 南 基

산 림 청

청 장	申 洵 雨
기 획 관 리 관	孫 讚 俊
사 유 림 지 원 국 장	曺 連 煥